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법 률 학

제 65 권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Law Vol. 65 No.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주체 108(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법률학 (루계 제547호)

차 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김 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억센 뿌리이며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조국과 혁명의 만년재보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8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선행한 시기 로동계급은 이미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정권을 창설한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력사상 로동계급의 첫 정권형태로 출현한것은 빠리꼼뮨이였다. 꼼뮨은 당시 일부 유럽나라들의 력사적조건에 맞는 정권형태로서 로동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독재정권이였다.

당시 로동계급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자신을 해방할 과업을 내세우고 투쟁에 떨쳐나섰지만 반면에 로동계급의 동맹자로 되여야 할 농민대중은 아직 자기 처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반혁명의 편에 서있었다.

그후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로 출현한것은 로씨야의 로농쏘베트였다.

쏘베트는 로동계급과 농민에 의거하여 창건된 정권형태로서 농민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자본주의국가였던 로씨야의 구체적조건에 맞는 정권형태였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짜리전제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한편 지주, 자본가들의 정권을 전복하고 로농독재정권을 세우는것은 빈농에게 있어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이로부터

로동계급과 빈농과의 동맹문제가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빈농을 계급적기초로 하는 쏘베트를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꼼뮨과 쏘베트는 다같이 로동계급의 정권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시대적조건과 환경에 적응한 정권형태로서 모든 나라의 혁명실천에 맞는 정권형태로는 될수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는 새로운 정권형태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자주성의 시대는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시대이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건설 등 각이한 발전단계에서 전개되였으며 여기에는 로동계급만이 아니라 농민,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광범히 참가하였다.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전례없이 넓어진 자주성의 시대는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혁명력량을 묶어세울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된 력사적시대의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 구현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은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였으며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력량이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은 광범한 반일력량을 묶어세워 혁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권형태를 창조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19(1930)년 6월 30일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일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을 타도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일제를 타도한 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정권건설로선의 기본내용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주체21(1932)년 5월 소사하에서 진행된 반일인민유격대 지휘성원, 당 및 공청 지도간부회의에서 이미 제시하신 정권건설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계급관계, 사회경제적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정권건설로선이며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주권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이였다.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해방후 우리 나라에 수립될 인민정권의 원형을 마련하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백승의 지략으로 가로놓인 난관을 승리적으로 타개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시는 한편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정치적 공세를 물리치는 가렬한 전투속에서 유격구들을 창설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다.

193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가 창설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책원지,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전략적기지, 후방기지가 튼튼히 마련되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천명하신 정권건설사상에 기초하여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시 국제당이 내놓은 쏘베트로선에 따라 쏘베트정부를 수립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되여있었다.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도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쏘베트로선을 그대로 본따서 유격구에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쏘베트정부를 세웠으며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에 대한 철폐를 선포하고 공동생활, 공동로동, 공동분배를 실시하였다.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강요한 극좌적인 쏘베트시책들은 유격구인민들속에서 심한 동요와 혼란을 조성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2월 22일 왕청현 마촌에서 하신 반일인민유격대 지휘성원, 당 및 혁명조직책임자들과의 담화에서 유격구들의 정권건설에서 발로된 쏘베트정권의 좌경적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면과업과 수행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두만강연안의 일부 지역들에 조직된 쏘베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18일 가야허유격구의 사수평에 나가시여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와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혁명정권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후 두만강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촌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형태로 농민위원회가 나오고 점차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였다. 이리하여 자기의 진정한 주권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는 로동자, 농민, 병사대중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력량을 망라하고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형의 정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신데 기초하여 유격구들에서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여야 유격구의 혁명군중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와 억압

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정치적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유격구가 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기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 하여금 유격구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며 친일지주와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일제와 친일지주,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시고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공장, 광산, 철도, 은행과 예속자본가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며 그 일부로는 가난한 인민들을 구제하고 8시간로동제와 로동보호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고 아동단학교들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주민들이 유격구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주주의적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유격구들에는 새로운 사회경제관계와 혁명적질서가 세워졌으며 인민들은 식민지적,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당당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들은 수천년을 두고 바라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꽃피워준 리상향으로, 인민의 새세상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5일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는 인민혁명정부정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였으며 해방후에는 20개조정강에서 국가정책으로 명문화되였다.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혁명정부의 수립과 그가 실시한 사회경제개혁들은 인민들에게 해방된 조국땅우에 세우게 될 인민정권의 원형을 현실로 보여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신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무장력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건설을 튼튼히 담보할수 있다.

피압박인민이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한다.

당시 여러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청원의 방법으로부터 시위와 봉기, 폭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진행되고있었지만 이 모든 투쟁은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게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동안 민족적독립과 자기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애국문화계몽운동이나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그리고 파업이나 소작쟁의와 같은 여러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투쟁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줄수 없었으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자체의 힘으로 격파하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건설을 혁명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고귀한 경험이 창조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무력의 믿음직한 담보밑에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0(1931)년 겨울명월구회의와 이듬해 5월에 열린 소사하회의에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에 따라 두만강연안일대에서 일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유격구를 내올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이 일대의 농촌지역을 혁명화하고 혁명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시였다.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들이 창설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워 모든 유격구들을 일제의 그 어떤 《토벌》공세도 격파할수 있는 철벽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유격구들에서의 인민정권의 수립과 활동을 총대로 튼튼히 담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은 혁명무력의 믿음직한 담보밑에서만 반혁명무력을 격파하고 진정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세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정권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참다운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원형을 창조하시여 정권건설의 력사적뿌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것은 인민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오늘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더없이 귀중한 재보로,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정권건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인민정권, 혁명전통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

박사 부교수 리 경 철

1. 서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철저히 법에 의거하여 활동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준법성에 관한 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여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2.1.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이 사상을 연구하는데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되게 하여 국가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상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에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보장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있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것은 국가기관들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해석적용하는 모든 활동을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준법성은 법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이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므로 국가기관도 활동과정에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은 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해석적용하는 활동으로 구분된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해석적용하는것이 국가기관들의 활동의 형태를 의미한다면 준법성은 그 전반에 관통되여있으면서 그것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내세우는 원칙적요구라고 할수 있다. 준법성은 법의 제정과 집행, 해석적용의 전과정에서 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원칙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우선 국가기관들이 법제정사업을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기관들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상급기관의 법문건에 부합되게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제정한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또한 국가기관들이 행정행위를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행정적집행기관들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 방식에 따라 법집행을 조직지도하고 행정허가와 행정검열, 행정강제, 행정처벌과 같은 행정행위들을 진행한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또한 법기관들이 법적통제를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검찰재판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이 법적수속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제기된 사건을 실체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것은 국가기관들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해석적용하는 모든 활동을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 방식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국가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이다. 국가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자면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법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하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되여야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으며 또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할수 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은 국가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상이라는데 그 진수가 있다.

2.2.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관건적고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관건적고리라고 밝혀주시였다.

일반적으로 기강은 규률과 질서를 이르는 말이다. 법적기강을 바로세운다는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규률을 강하게 세운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관건적고리라는것은 법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 국가경제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질서와 규률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은 우선 국가기관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공민들속에서 준법기풍을 세울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자면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는것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은 국가기관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법적권리와 의무가운데는 공민들이 법에 따라 스스로 지니는것도 있지만 국가기관의 법적용을 통하여 보장되는것도 있다. 실례로 공민들이 국가소유주택을 리용할수 있는 권리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사회보장년금을 받을 권리 같은것은 국가기관들의 법적용을 통하여 실제로 보장받는다.

법적용을 통하여 지니게 되는 법적권리와 의무는 국가기관들이 법을 정확히 적용할 때에만 공민들에게 실제로 보장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법적권리와 의무가 공민들에게 실제로 생겨나게 된다.

국가기관들이 법에 따라 공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려고 적극 노력하게 된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사회주의법에 규정되여있는 자유와 권리를 실제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공민들은 법을 존엄있게 대하지 않으며 자각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들에서 준법성을 높이는것은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은 또한 국가기관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법적기강을 바로세우자면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준법교양만으로 다 없앨수 없다.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없애자면 준법교양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법적통제를 강화하자면 그것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에서 준법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의 형태와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와 무자비하게 투쟁하기 위한 징벌을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법적통제기능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의 조직구성과 활동원칙, 임무와 권한을 규제하며 반혁명분자들과 법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취급처리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법적수속절차와 방법, 형식들을 규제한다.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범죄 및 위법현상과의 법적투쟁을 철저히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할수 있다.

이처럼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에서 준법성을 높이는것은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2.3.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고 사건취급과 위법자처리를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첫째로,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킨다는것은 국가기관들이 법제정과 국가관리, 사건취급처리에서 법을 철저히 지킨다는것이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국가기관들이 법제정사업을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법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법의 엄격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법을 제때에 제정하기 위하여 최고주권기관이 헌법과 부문법을 제정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각이한 국가기관들이 규정과 세칙을 내도록 한다. 사회주의헌법과 법제정법에서는 국가기관들이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낼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고있다. 때문에 국가기관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임무와 권한에 따라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과 방침들을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부문법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내각에서는 국가관

리와 관련한 규정을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현실에 맞게 제때에 내며 위원회, 성들에서는 내각규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세칙을 제때에 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행정경제기관들이 국가관리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하는것이다.

행정경제기관들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경제기관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행정경제기관들이 사업과정에 국가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행정경제기관들은 국가관리, 경제관리를 철저히 국가의 법과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법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각은 모든 경제지도기관들이 내각의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국가행정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법기관들이 사건취급처리에서 제정된 법적수속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이다.

법기관들이 사건취급처리에서 제정된 법적수속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자면 법일군들이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제기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며 사건에 대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취급처리에서 제정된 법적수속절차를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법일군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에 규정된 법적수속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둘째로,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며 사건취급과 위법자처리를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이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법준수와 관련한 요구라면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며 사건취급과 위법자처리에서 공명정대성을 보장하는것은 법적용과 관련한 요구이다.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법적통제의 날을 세우며 사건취급과 위법자처리를 공명정대하게 한다는것은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법준수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해당한 제재를 가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법적통제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한다는것이다.

법적통제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통제하는것이다.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은 다같이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로서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이 국가기관체계와 법질서수립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르다. 때문에 법기관들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기관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검찰기관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법준수정형을 감시할뿐아니라 다른 법기관들의 법준수정형까지 감시하는 권능을 가진 법기관이다.

검찰기관이 자기의 권능을 옳게 행사하여야 나라의 법질서와 법집행규률을 바로세울수 있다.

검찰기관들은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공민들의 법준수정형을 엄격히 감시하며 범죄와 위법현상을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임무로 하고있다. 검찰기관들은 하나의 원칙,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특수기관도 국가의 법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국가기관들의 결정, 지시가 나라의 법과 국가의 정책에 맞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검찰기관들은 준법성감시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반범죄투쟁의 전술을 바로세우고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범죄사건들을 제때에 적발하며 예심을 잘하여 범죄의 진상과 여죄련루관계를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판기관은 제기된 형사, 민사사건들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법적결론을 내리는 법기관이다. 재판은 재판기관만이 행사할수 있는 고유한 권능이며 다른 법기관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기관의 이 권능을 대행할수 없다.

재판기관은 당의 사법정책과 국가의 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은 사법처리에서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기의 권능을 옳게 행사하여 제기된 형사, 민사사건들을 의문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 계획에 의한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며 제기되는 중재사건들을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보안기관은 당과 수령, 인민정권을 보위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에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법기관이다.

인민보안기관이 국가재산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세우고 유지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온갖 위법행위와 화재사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자기의 권능에 맞게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서로 다른 권능을 가진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기 위한데로 사업을 지향시키고 보조를 맞추어나가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에 따라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밖에 각종 감독통제기관들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도 중요하다.

법적통제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법일군들이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이다.

법일군들이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은 법적통제를 철저히 법에 따라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법일군들이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한다는것은 위법자들을 대상에 관계없이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며 거기에서 그 어떤 례외나 특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므로 법집행에서는 특수나 례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가 누구이든, 그 어느 단위이든 다 문제시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법과 법기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두터이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법과 법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법일군들은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직권에 눌리우거나 정실안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며 법집행에서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정책적대, 법적대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법일군들이 위법자들을 직위와 공로, 기관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법자의 직위가 높거나 지난 시기 공로가 있다고 하여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공화국법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와 준법성이 약화되게 된다. 법일군들은 모든 사건들을 대상에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하여 법집행에서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2.4.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당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신소를 정확히 처리하는것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첫째로,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국가기관 일군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도록 하는것은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때문에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것은 우선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독창적인 준법교양체계가 세워져있다.

준법교양체계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안의 준법교양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체계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준법교양단위를

조직하고 법무해설원을 통하여 준법교양을 조직진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여 모든 국가기관 일군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들에서 준법교양을 정치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국가기관 일군들이 당조직과 당의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당조직들에서 준법교양을 정치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틀어쥐고나가면 국가기관 일군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국가기관 일군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을 조직전개하도록 교양하며 법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조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요한것은 또한 교육기관들에서 법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준법교양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강화하는것이다.

교육기관들에서 국가기관 일군들과 그 후비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나라의 법을 무겁게 여기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하며 사회주의헌법과 자기 부문의 법과 규정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기관 일군들의 특성에 맞게 준법교양을 진행하는것이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교양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것만큼 그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심어주는것이 중요하다.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기관 일군이라고 하여 례외로 될수 없다.

국가기관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준법성이 강해야 하며 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국가기관 일군들 특히 법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뼈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둘째로,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준법교양의 방법 하나만으로는 위법현상들을 완전히 없앨수 없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준수가 담보되는 행동준칙이므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국가기관 일군들에게 국가의 법질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강한 자극을 주고 모든 일군들을 법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국가기관 일군들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따라 우리 당과 국가는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하고있으며 특히

정권기관과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검찰기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그것은 검찰기관이 당의 경제정책집행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하기때문이다.

검찰기관들은 행정경제감시를 강화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기관들이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개인주의적방법, 자본주의적방법을 끌어들이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일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검찰기관들은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고 경제관리질서를 어기거나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법일군들의 법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법일군들속에서도 낡은 사상 등의 영향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위법현상을 과학적인 증거자료와 법률에 립각하여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해석과 판단에 따라 망탕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소송법상요구를 어기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위법현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법집행을 법적요구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법일군들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들을 융화묵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이게 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된다.

검찰기관들이 인민보안감시와 재판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찰기관은 다른 법기관들의 법준수정형에 대한 준법성감시를 옳바로 진행하여 사건취급처리에서 법적요구를 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을 임무로 한다.

검찰기관들은 자기의 고유한 권능에 맞게 인민보안감시를 실속있게 하여 인민보안기관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기관들은 재판감시를 짜고들어 제기된 사건들을 당정책과 법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역할도 높여야 한다.

재판기관도 법일군들속에서 준법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재판기관은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통하여 사건관계자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기관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거나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방법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마비시

키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켜 적들을 도와주는 리적행위라는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의 해독성이 있다.

법기관들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특권행세를 하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엄하게 문제를 세워야 한다.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고 우리의 혁명진지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도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셋째로,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당조직들이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여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저히 당정책에 립각하여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이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되는것은 사회주의정치기구체계에서 당과 국가가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된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이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국가는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자면 당조직들이 국가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정치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국가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바로 하는것이다.

정책적지도는 국가기관들이 당정책과 국가의 법에 맞게 사업하도록 이끌어주는것이다. 이것은 당정책과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들에 활동방향을 정확히 주고 그 집행정형을 늘 장악지도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국가경제기관들과 사법검찰,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들이 당정책과 국가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조직전개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국가기관 일군들이 법규범과 규정에 어긋나게 사업을 조직하거나 기관본위주의적립장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키잡이를 바로 하며 그런 현상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정치적지도는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조직사상적단련을 강화하여 본신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이다. 이것은 일군들에 대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조직들은 국가기관 일군들의 사업상특성에 맞게 정치적지도, 당생활지도를 짜고들어 그들이 국가의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일군들이

사건취급과 위법자처리를 엄격하면서도 공명정대하게 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위법현상이 나타나면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이 자기 결함을 고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이 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것은 몇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큰 감화력을 발휘하며 긍정교양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는 넷째로,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를 잘 처리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온갖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와 강한 투쟁을 벌리려면 반드시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처리를 잘할데 대한 사상은 국가기관활동의 준법성보장에서 군중적통제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정당한 사상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준법교양 하나만으로 준법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기때문에 교양사업에 통제를 배합하여야 준법성보장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하여 그리고 준법교양체계와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과 함께 위법현상과의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위반자들에게 법적제재를 가하는 사업도 배합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준법교양과 사상투쟁, 법적통제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준법교양과 사상투쟁,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적통제도 배합하여야 한다. 그것은 군중적통제가 국가기관활동의 준법성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과 관련된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항상 군중과 사업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지키며 법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가 하는것은 군중이 잘 안다.

인민들의 신소를 정확히 처리하는것은 국가기관 일군들의 사업이 군중적통제속에서 옳게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가기관 일군들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3. 결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준법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준법성을 높일데 대한 사상리론이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는 길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사회주의준법성에 관한 사상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가 있다.

실마리어 국가기관, 준법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대강

교수 박사 황 금 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과학적인 진로를 명시한 위대한 대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공화국을 력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대강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국가정권문제는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해결될수 있다. 수령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정권이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의 국가활동방향이 제시된다. 사회주의국가의 공고성과 위력, 불패의 생활력은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

우리 공화국의 발전력사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해방후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정권을 건설하시여 부강조국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정권건설의 원리와 원칙,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우리 인민정권을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국가건설분야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건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국가정권건설과 강화발전의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다음으로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는 불멸의 대강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은 국가건설전반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정권의 주인인 인민의 요구와 리익,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왔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인 국가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들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틀어쥐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 계신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롱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나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고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풀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수 있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밝혀주는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은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국가는 없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이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며 철저히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인민정권의 제일가는 본분으로 내세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아니라 이민위천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다.

우리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으며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 교육제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특권행위가 추호도 허용되지 않는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수 있는 주되는 위험요소이다. 물론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인 사회인것만큼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 일부 나타날수도 있다. 그러나 참다운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집권당과 인민정권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립장이 응축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리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것은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애국헌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여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이런 나라야말로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공화국정권을 절대적으로 믿고있으며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다 바쳐 받들어나가고있다.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한다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국가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가며 국가활동전반에서 당의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당의 령도를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요구로, 국가활동의 생명선으로 내세운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체현자인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옳바로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군들의 롱락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고아의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이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나가면서 세계가 괄목하는 기적적승리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이 밝혀주는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이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이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일관되여야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말려들고 실무적방법에 매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다.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하여 우리 공화국정권은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있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있고 국가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과학적인 진로를 밝힌 위대한

대강으로 된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국가건설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강위력한 불패의 혁명정권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국가건설사상, 국가정권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부교수 강 남 철

우리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벌리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비상히 분발승화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을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정신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공화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끝없이 강성번영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보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성실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이며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타당성과 생활적바탕을 가진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이다.

국가제일주의는 자신의 창조적지혜와 영웅적투쟁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왔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여 우리 국가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국가로 건설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건설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는 이민위천의 사상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국가건설과 활동에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였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고있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며 철저히 보호하고 보살펴주는것은 공화국정권의 제일가는 본분이다. 우리 국가는 모든 정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하며 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활동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 교육제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을 견지하여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하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인민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고있다. 참다운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정권의 존재방식으로 하고있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있다.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은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로 건설되였다.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만민을 공감시키고 집결시킬수 있는 우월한 사상과 정치가 구현되여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라고 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우리 공화국은 전기간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을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모든 사회성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며 그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되여온 과정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혁명적의리, 동지애에 기초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실현되고 그것이 확고히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일심단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살수 없고 몇천개의 핵탄두에도 비할수 없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로 일떠섰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주체사상이 내세운 혁명과 건설의 근본립장이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토대와 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경제와 국방건설을 진척시켜왔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갔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을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었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집중적인 압살공세로 하여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압력에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정의를 수호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하여 오늘과 같이 강대한 힘을 키웠다. 세계는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제와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성과적으로 실현한 례를 알지 못하며 더우기 령토도 인구도 작은 나라가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봉쇄를 견제하며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상상하지 못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가 견지하여온 자력갱생의 원칙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것인가를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은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로 건설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령도적지위를 넘겨주는 식으로 대치할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앞날을 내다보며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고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혁명전통계승문제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있는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기적의 나라,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로 일떠선 우리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가득 지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더욱 빛내이는데 자기들의 삶의 영예와 긍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직접적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

대중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분발하여 떨쳐나서야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의 경험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우리 힘, 우리 식으로 살아나갈 때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남김없이 떨칠수 있다는것이 간고한 시련을 헤쳐오는 나날에 우리 인민이 체득한 철리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게 한다.

인민대중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장속에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요구대로 투쟁해나갈 때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우리 국가를 위력한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세우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은 당의 령도를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천만대중의 숭고한 애국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천만대중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발양될 때 승리적으로 전진하여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사상감정으로부터 발휘된다.

우리 인민이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따라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부강조국건설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벌려온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건에서 장구한 기간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여온 가장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빈터우에서 초행길을 헤치며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고 재더미만 남은 페허우에서 기적의 천리마를 불러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칠수 있은것도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로 악랄해지는 속에서도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세계에 그 위용을 떨치는 강위력한 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바로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강렬한 애국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투쟁하였기때문이다.

당을 따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을 떠나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애국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애국헌신의 장정으로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사회주의

수호전을 이끄시는 엄혹한 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 우리 공화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강위력한 국가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신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정신적량식으로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고수하고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대중의 애국적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섰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이 조국과 인민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최대의 헌신성을 발휘하게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그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이다.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해나갈수 있다. 목표는 비상히 높고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지만 전체 인민이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칠 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투쟁할 때 조국의 부강번영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로 아로새겨온 사회주의조선의 긍지높은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천만대중의 열렬한 애국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에 사상적바탕을 두고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무궁한 번영이 있다.

우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성실한 피와 땀을 바쳐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세계만방에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가제일주의, 사상정신적기초, 애국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인민회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 명 일

1. 서 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돌격전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떨치고있으며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인민회의라고 생각합니다.》(《**김일성**전집》 제6권 40페지)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는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회로서 력사상 존재한 모든 형태의 국회와 완전히 구별된다. 국회가 출현하여 수백년의 력사가 흘렀으나 인민회의처럼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들로 이루어지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법으로 채택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완전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일찌기 없었다.

본 론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인민회의가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로 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민회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것으로 하여 가장 완성된 국회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2.1. 주체의 인민회의에 관한 사상창시와 원형마련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는 우리 인민의 장구하고도 피어린 투쟁속에서 수립되고 공고발전되여 온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인민회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이미 간고한 항일의 혈전속에서 창시되고 그 원형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회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에 구현하시여 그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1930년대 동만일대에서는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편향으로 하여 유격구내에서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빚어졌다. 당시 쏘베트급진론자들은 유격구내의 실정에도 아랑곳없이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이라는 극좌적인 구호밑에 사유재산의 철폐와 재산의 공유화, 공동로동, 공동분배, 공동생활을 주장하는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들고나왔으며 이를 유격구내에 내려먹이였다. 결과 유격구내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쏘베트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렸으며 쏘베트는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쏘베트급진론의 부당성을 신랄히 폭로비판하시고 유격구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통일전선적정부를 세우되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력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이라고 불리워지고있는 정권건설로선이다.》(《**김일성**전집》 제97권 7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해방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죠아의회제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이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의 기본내용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파괴한 다음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제애국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민주주의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과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쏘베트로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적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것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의 결속을 엄중하게 저애하는 좌경로선이였다. 그러므로 이자들의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자주적인 발전을 심히 억제하는것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념원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유격구에 혁명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2(1933)년 3월 18일 왕청현 가야허유격구의 사수평에서 진행된 선거집회에 참석하시여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력사적인 선거집회를 지도하시였다.

선거집회에는 사수평마을 인민들과 유격대원들, 왕청 제5구의 당 및 혁명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유격구역의 여러 혁명조직대표들이 참관단으로 참가하였다.

선거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싸웠으며 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 일군들을 인민혁명정부구위원회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리하여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게 되였다.

사수평에서의 첫 인민혁명정부수립은 모든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의 본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수평에서 혁명정권건설의 시범을 창조하신 후 모든 유격구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사업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실로 유격구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는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우리 나라의 인민회의의 원형이였다.

2.2. 인민회의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확립된 완성된 형태의 인민의 대표기관이다.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옹호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인민대표제기관의 본보기로 된다. 인민회의에 의하여 인민들은 자기의 진정한 대표기관을 가지고 국가주권행사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34페지)

인민회의는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며 인민앞에 자기사업을 책임지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대표기관의 사회계급적구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대표기관이 어떠한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명과 임무, 성격과 활동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각급 인민회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하여 선출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인민들의 사회활동과 생활의 거점인 근무단위와 행정지역단위의 주민총회에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이 선출될수 있게 하며 선거에서 민주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담보한다.

북조선인민회의로부터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회의를 구성한 대의원들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에 의하여 선출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는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거하였다.

이들중에는 로동자가 16.2%, 협동농장원이 9.6%, 군인이 17.2%이며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김일성**상과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성원이 20.7%,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성원이 13.5%,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기술자, 전문가자격소유자들이 92%이며 대의원의 94.8%가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하였고 녀성은 17.6% 이다.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자본주의대의제기관으로 분식되는 자본주의국가의 국회는 철두철미 반인민적인 부르죠아계급의 대표기관이다.

자본주의국회가 반인민적인 부르죠아계급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자본주의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을 정치에서 배제할것을 추구하여 확립된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것과 관련

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의원후보들을 각 정당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요구를 제한, 일축하며 선거를 정당들간의 집권경쟁으로 만든다.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선거에서 청년들과 진보적인 인사들, 근로대중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의 소유정도와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과 같은 각종 명목의 부당한 전제조건들에 의하여 제외된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선거구조직과 투표, 당선자확정을 비롯한 선거의 모든 공정과 단계마다에서 각종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로 선거를 불공평한것으로 되게 한다.

극히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선거제도에 의하여 후보자로는 오직 대독점자본가들자신이나 그 대리인들만이 나서며 그들은 독점재벌의 막강한 재정적지원밑에 손쉽게 당선된다. 바로 돈있는 자만이 선거전에 나설수 있고 돈을 누가 더 많이 뿌리는가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되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선거는 금전선거로 특징지어진다.

자본주의국회야말로 인민대중을 등진자들의 정권독점을 합법화하는 비민주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통치기구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대표제기관이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자면 그것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대표제기관을 조직하는 목적이 바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법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있다.

인민회의에 제기되는 모든 법안과 토의문제의 제출권은 인민대중의 대표들과 그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일정한 국가기관들에 속한다. 인민들은 인민의 대표들과 해당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서 나서는 주요문제들을 인민회의의 토론의제로 자유롭게 제기한다. 인민회의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모든 법안과 의안들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그것을 법과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한다.

지난 기간 최고인민회의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을 채택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법과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각급 지방인민회의들도 해당 지역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결정으로 채택하고 실현하였다. 모든 국가정책과 법을 오직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서만 토의결정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는 인민대중의 의사가 아니라 부르죠아계급의 탐욕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만을 토의결정하는 반인민적인 기관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의안제출권은 인민들이 아니라 인민들과 동떨어진 대독점자본의 대표들과 그 집단, 대통령이나 정부수반을 비롯한 대독점자본의 하수인들에게 부여되여있으며 그들은 인민의 의사가 아니라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반인민적요구가 담긴 법안이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진보적인사들이나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담긴 법안이나 의안혹은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의 요구와 저촉되는 법안이 일부 제기되는 경우에도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내의 거수기와 강도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 채택을 악랄하게 가로막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의 국회에서 토의결정되는 문제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과는 전혀 관계없는것뿐이며 국회를 통하여 채택되는 국가의 정책은 오직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무제한한 착취적요구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자본주의대의제가 출현한 때로부터 수백년의 력사가 흘러갔으나 그 어느 자본주의국가의 국회에서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실현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적이 없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대의제의 기만성과 반인민성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대의원들이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기때문이다.

선거자들앞에서 대의원들이 책임지는 제도는 인민회의가 언제나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그것은 대의원책임제도가 선거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신임을 잃은 대의원을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회의를 언제나 인민에게 충실한 대표들로 구성될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은 선거된 후 일정한 임기동안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의원자격은 대의원들이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을 정확히 행사하고 의무를 옳바로 리행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대의원책임제도는 바로 선거자들로 하여금 대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옳바로 리행하지 않고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는 경우 그를 임의로 소환할수 있게 하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자들의 소환권은 실제상 자기의 대표들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이며 인민회의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의원과 선거자와의 호상관계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자들로부터의 《의원독립》원칙이 표방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는다.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의원은 그가 선출된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국민》, 《전국가적리익》을 《대표》한다고 력설하면서 《의원독립》원칙을 변호한다. 의원들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지지 않는것으로 하여 국회는 인민과 동떨어진 반인민적기관으로 되며 의원들은 인민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오직 부르죠아계급의 착취적요구를 법화하는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나라에서 의원이라고 하는자들은 온갖 특전과 특혜를 누리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반동의 무리들이다. 의원들은 근로대중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막대한 액수의 봉급을 받을뿐아니라 독점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긁어모은다. 세금의 면제, 특권적인 통행, 각종 시설과 수단의 무료사용, 특별한 인신불가침권 등은 자본주의대의제하에서 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의 일부이다. 자본주의나라의 선거가 추악한 개싸움으로 일관되는것도 바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온갖 특권을 보장받아 변태적이며 탐욕적인 요구를 실현하려는 자들사이의 경쟁과정인것과 관련된다.

2.3.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인민의 대표기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전반적인 국가기구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회의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는것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민회의가 사회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34페지)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이며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범위의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완전권은 본질에 있어서 주권실현에서 전반적이고 제한되지 않는 국가적권한이다. 국가적권한의 일정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거나 전반적인 국가적권한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기관은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되지 못한다.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모든 권한을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회의가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되여야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할수 있고 제정된 법의 정확한 집행과 적용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도통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법으로 표현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옹호실현될수 있다.

인민회의의 완전권은 립법권, 국가기관조직권,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조약의 비준 및 페기결정권 등을 구체적내용으로 한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이 기관이 립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립법권은 인민회의의 완전권에서 기본을 이룬다. 립법권이 인민회의의 완전권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고 그것을 법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것을 주되는 사명으로 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회의의 립법권은 법안의 작성과 심의, 채택과 공포 등의 립법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을 채택하거나 이미 있는 법을 수정보충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회의는 주요법안토의의 기본단위이며 모든 주요법안은 인민회의에서 심의토의된다. 인민회의에서의 법안토의는 초안발표와 보고,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법안토론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은 물론 해당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대표자들도 참가할수 있다.

법안심의토론이 완료되면 인민회의는 가결을 진행한다. 인민회의에서의 법안가결은 해당 법안 전체 혹은 조항별로 다수가결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과 같은 주요법안인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의 2/3의 다수찬성으로, 일반법안인 경우에는 출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인민회의대의원들이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며 인민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에 언제나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모든 법안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인민회의가 채택한 법은 인민회의 명의로 발포되며 그것은 대체로 공포일부터 효력을 가지고 적용실시된다.

인민회의가 립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정과 단계는 철저히 인민대중을 립법의 주인

으로, 담당자로 내세우는 과정인 동시에 법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드팀없이 구현하기 위한 공정이며 단계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국가기관조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국가기관조직권은 국가기구체계에서 인민회의의 주도적지위를 담보하는 완전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인민회의는 국가기관조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가장 원만히 실현한다.

인민회의의 국가기관조직권은 국가기관의 주요성원들에 대한 선거 및 소환권과 임명 및 해임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선거 및 소환권과 임명 및 해임권을 배합하여 국가기관들을 조직하는것은 국가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회의는 선거제와 임명제를 통하여 국가기관들을 조직함으로써 국가기관들이 결정채택에서의 민주주의와 그 집행에서의 통일적지휘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회의는 해당 국가기관의 사명과 기능, 활동상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기관들은 선거제 혹은 임명제형식에 따라서만 조직하며 행정적집행기관과 같이 민주주의와 통일적지휘의 배합을 절실히 요구하는 국가기관들은 선거제와 임명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조직한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인민회의에 의하여 조직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기관들은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국가기관으로 된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인민회의는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수립권을 지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법화한다.

사회주의헌법에 밝혀진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원칙,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활동원칙은 인민회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심의승인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이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되여야 한다. 행정적집행기관이 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작성하고 편성하지만 그것은 인민회의의 승인하에서만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다.

인민회의는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하고 그 실행과 집행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인민회의에서 심의승인된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은 법적성격을 띠며 그 철저한 집행은 모든 국가기관들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인민회의가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조약의 비준 및 폐기결정권은 인민회의가 행사하는 완전권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조약은 대외관계수립의 기본형식이며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조약은 국가적의사의 표시인것만큼 그것은 해당 국가에서 주권실현의 최고기관에 의해 비준페기되여야 그 리행이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인민회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관계리념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와의 조약비준을 결정하며 인민대중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에 배치되는 조약에 대하여서는 페기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오직 인민회의뿐이다.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가주권의 일정한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대의제기관으로 표방되는 국회는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 아니라 정부종속적인 기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립법은 사실상 정부를 통하여 제기되는 대독점자본의 의사를 법화하는 과정이며 국회는 립법에서 자립성을 거의나 가지지 못하고 단지 정부독단의 법안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는 기만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의회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부에 법안제출권이 독점되여있으며 국회는 오직 정부가 제기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법으로 채택한다. 대통령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는 국회립법에 관여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교섭권, 법안거부권 등으로 하여 국회는 립법에서 정부의 구속과 제한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가 불신임의결을 통하여 정부활동을 통제하는듯이 보이지만 정부의 국회해산권이 불신임의결에 비하여 우위에 놓이는것으로 하여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실현될수 없다. 대통령공화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회에 정부조직통제권이 부여되여있지 않으며 정부는 국회와 별도로 조직되고 국회는 형식적인 정부통제권마저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대의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정부나 기타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된다.

조약의 승인비준권이나 예산승인권 같은것도 국회에 부여되여있다고는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승인만을 표시할뿐이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구속권한이 막강한것으로 하여 사실상 국회가 그것들을 부결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를 대의제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 미화하면서 마치도 국회가 국가권력실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것처럼 분식하고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국가권력실현의 전속적기관으로서 국회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국회가 완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종속적인 기관으로 되는것은 일정한 론쟁과 타협을 요구하는 국회에 비하여 관료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정부에 의거하는것이 대독점자본의 탐욕적요구를 실현하는데 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때문에 부르죠아반동들은 국회를 자본주의반동통치를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리용하고 실제적으로는 정부를 국가권력실현의 기본수단으로 내세우고 정부를 통하여 저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강행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결국 국회는 행정독단의 통치를 미화하면서 정부에 복종하는 정부종속적인 기관으로 된다.

오늘날 자본주의국가통치제도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에 국회의 지위와 역할은 저하되고있으며 국회는 날을 따라 더욱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되고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이 아무리 자본주의통치를 《국민주권적인 통치》로 력설하여도 그 반인민적

본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인민대표제기관으로서 인민회의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 국회에 비할바없는 절대적우월성을 가진다.

2.4. 인민회의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운영방법은 해당 대의제기관의 진보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그것은 해당 국회의 운영방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정책과 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규정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34~235페지)

인민회의는 회의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대표기관인것으로 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며 국가관리실천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회의형식에 따라 운영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의 대표기관의 회의형식을 옳바로 설정하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인민회의에 민주주의적으로 제때에 반영할수 있게 담보한다.

인민회의의 기본활동형식은 회의이며 회의형식은 회의의 민주주의적성격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정기회의는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기본회의형식이다.

정기회의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표제기관의 회의형식이다. 따라서 정기회의는 회의소집에 관한 그 어떤 제의가 없이도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정기회의가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기본회의형식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인민회의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하여 자기의 권한과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주권행사를 일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주기적으로 인민회의에 반영하는것은 인민의 대표기관의 정책작성과 립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주권의 정상적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구이다.

국가의 주요정책작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파악하고 대중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인민의 대표기관에 반영하는 문제는 주로 정기회의형식으로 해결될수 있다. 정기회의에서는 대체로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실행과 집행에 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그밖의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법을 채택한다. 따라서 정기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운영하는것은 정책작성과 법채택에 인민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인민회의를 통한 주권행사를 일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회의의 정기회의에서 토의할 문제들은 대의원들에게 미리 예고되며 대의원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대중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것을 정기회의에 제출한다. 이것은 인민회의의 정기회의형식이 인민대중을 진정한 국가관리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회의형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림시회의는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담보하는 다른 하나의 회의형식이다.

림시회의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회의형식이다.

림시회의가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운영을 규정하는 중요한 회의형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정책화, 법화할수 있도록 담보하는 회의형식인것과 관련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회의를 신속히 소집운영하여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정책화, 법화할수 있다.

인민회의의 림시회의는 바로 사회주의국가관리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한다. 인민회의는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과 일정한 수의 대의원(대의원전원의 1/3이상)들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것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 임의의 시기에 림시회의소집을 요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회의의 민주주의적성격을 담보한다.

인민회의의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는 인민회의로 하여금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기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국가적문제들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가장 옳바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회의형식이다.

자본주의대의제기관으로 표방되는 부르죠아국회에도 여러가지 회의형식이 있다. 통상국회, 림시국회, 특별국회 등으로 불리워지는 자본주의국회의 회의형식들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묵살하고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법을 작성채택하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회의형식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통상국회는 주기적으로 소집된다고는 하지만 년중 거의 매일 운영되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거나 국회에 접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하여 인민의 요구는 국회에 전혀 반영될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자들은 인민의 리익과는 관계없는 법안을 《심의》하면서 공리공담을 일삼고있다. 부르죠아반동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통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림시국회나 특별국회를 리용하여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인 정책과 법을 작성채택한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회의구성과 의안제출, 회의집행에서 사소한 제한조건이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회의구성과 의안제출에서 특별한 제한조건을 설정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권을 허용하는 대표제기관은 절대로 민주주의적인 기관으로 될수 없다.

인민회의가 가장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가의 로선과 정책, 법을 작성채택할수 있도록 하는 회의구성과 의안제출질서, 회의사회질서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회의성립조건은 어느 정도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회의가 구성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써 해당 대표제기관의 민주주의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회의성립조건을 대표전원의 참가로만 규정한다면 회의소집에 저해를 줄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수의 대표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회의가 구성될수 있게 하면 회의와 법채택의 람발을 막을수 없고 대표제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있다. 인민회의는 회의성립

에서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주요한 국가적문제들을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대의원전원의 2/3이상의 참가로 성립된다.

의안제출질서는 인민회의운영에서 민주주의발양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마땅히 인민의 의사가 담긴 의안만이 인민회의에 제기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하며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한다.

인민회의의 회의사회방식과 집행방식은 인민회의가 모든 문제들을 민주주의적으로 토의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대표제기관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것이라 하여도 회의사회방식이 행정화되면 문제토의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인민회의는 회의사회방식과 집행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수한 제도나 개별적대표들의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의가 철저히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행되도록 담보한다. 해당 인민회의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기타 대표들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들은 오직 회의일정을 작성하고 회의단계와 순차를 정하며 토론과정을 사회한다. 회의사회는 회의집행을 념두에 두며 그것은 회의지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의사회에서 기본은 회의순차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회의성립조건과 구성, 의안제출과 회의집행의 전과정이 사소한 제한조건이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인민회의는 정책정립과 법채택에서 인민의 의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는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국회는 회의구성과 의안제기를 심히 제한일축하고 회의집행에서 의장특권에 기초한 극도의 관료화를 추구하는 반인민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가짜대의제기관이다.

오늘 대다수 자본주의국가헌법들에서는 국회의 성립조건을 국회의원전원의 1/3 혹은 과반수로 규정하고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그것을 규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집권당이 저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를 마음대로 소집하여 해당한 결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국회의안제출권은 법률상 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 의원들과 이러저러한 국가기관들이 행사하는것으로 되여있으나 실제적인 법안제출자는 대독점부르죠아계급과 그 리익의 대변자들이다.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은 저들의 리익이 담긴 각종 파쑈적인 법안을 작성하고는 그것을 대통령이나 정부수상, 의원들을 통하여 국회에 제기하도록 하고 그 강행통과를 위한 온갖 인위적인 조건들을 조성한다.

자본주의국회에서 의장은 막강한 행정특권을 행사하는 행정관료이다. 국회의장에게는 토론자지명권과 토론시간결정권, 토론중지권, 지어는 의원들을 회의장밖으로 내쫓을수 있는 권한과 그들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여있다. 국회의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국회에서의 문제토의는 극히 관료적으로 진행되며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상실한 행정관료적인 기관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국회가 고유한 의미에서의 대의제기관으로 되지 못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원칙에서 회의성립조건과 의안제출질서를 확립하고 의장특권에 기초한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기때문이다.

인민회의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제기관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대의원들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관련된다.

대표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대표제기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발언과 행동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으며 결의권행사에서 그 어떠한 구속과 제한도 받지 않을 때라야 대표제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인민의 대표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인민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변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토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대표들의 발언권과 결의권행사에 의하여 담보된다.

발언권의 원만한 행사는 문제토의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대표들이 지니는 발언권은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이 없을 때 충분히 행사될수 있다.

대표들의 발언시간과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발언과 행동을 문제시하면서 제재를 가한다면 대표들은 토의되는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명백히 제기할수 없으며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없게 된다.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 제기된 문제토의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으며 모든 문제를 당의 사상과 의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아무런 제한없이 제기할수 있다. 대의원들의 발언시간과 내용, 형식에는 사소한 제한조건도 설정되여있지 않으며 대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제하는 수단도 전혀 없다.

이것은 인민회의가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대표기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결의권은 대표제기관을 이루는 대표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결의권이 없는 대표는 아무리 발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도 사실상 대표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다. 그것은 대표권이 궁극적으로는 결의권행사로 표현되는것과 관련된다. 대표제기관의 회의의 기본목적은 제기된 문제들을 토의하는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토의과정에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결정으로 채택하자는데 있다.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토의문제에 대한 가결에 자유롭게 참가함으로써 결의권을 충분히 행사한다. 대의원들의 결의권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행사되며 자기의 의사표시에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민회의는 대의원들이 결의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가결결과확정에서 최대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담보한다. 대의원들은 결의권행사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의 정책과 법으로 전환하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들을 채택한다.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민의 대표제기관이라는 바로 여기에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자본주의국회는 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심히 무시하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반인민적인 대의제기관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회의원들은 오직 일정한 당파의 립장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하고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심히 제한일축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중지시키는것을 허용함으로써 국회를 극히 비민주주의적인 기관으로 만들어버린다. 자본주의반동들은 국회에서 비공개가결을 허용함으로써 가결과정을 사기와 협잡의 공간으로 리용하고있으며 지어는 유치하고 원시적인 가결방법을 리용하여 의원들이 결의권행사에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우기 토의되는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의장의 특권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은 심히 묵살된다.

자본주의반동들이 의원들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대독점부르죠아계급에게 유리한 법만을 통과시키며 전체 의원들이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의 의사에 추종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국회의원들은 대독점부르죠아계급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거수기로만 된다.

3. 결 론

실로 인민회의는 력사에 존재한 그 어떤 형태의 국회와도 다른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완성된 국회이다.

우리 식의 인민회의는 인민의 충복들로 이루어진 인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며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으며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도 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기관, 인민회의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고있다.

우리는 가장 완성된 국회인 인민회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돌격전에서 나라의 주인, 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회, 대표제기관, 대의제기관, 주권기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법치와 민주주의

박사 최 일 복

1. 서 론

현시기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수많은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궤변들이 조작류포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의식발전을 억제하고있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론의는 고대노예사회에서부터 시작되였으며 오늘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도 여러 정치법률사상가들에 의하여 각이한 견해들이 조작류포되고있다.

하지만 착취계급의 사상가들이 내놓은 견해들은 어느것이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제시된것으로서 착취계급의 독재통치를 미화분식하고 합리화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명되게 되였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는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제시된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력사적의의를 옳바로 인식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론문은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의거하여 인류력사에서 제기되였던 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사상과 견해들을 분석평가하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주체의 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2. 본 론

2.1. 선행한 견해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정한 시대의 모든 사상과 리론은 다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리해관계를 반영합니다.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수 없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58폐지)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문제는 법치사상이 제창되던 초시기부터 많은 사상가들의 주요한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오고있다.

고대 노예소유자사회로부터 현대 자본주의사회에 이르는 장구한 력사적기간 수많은 사상가들이 법치사상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문제를 주요한 론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착취사회에서 제창된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사상이나 리론들은 어느것이나 다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온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이였다. 그것은 그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사상가들이 모두 착취계급의 사상적대변자들이였기때문이다. 그들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계급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비과학적이며 반인민적인 리론을 제창하였다.

2.1.1. 고대시기의 견해와 그 기만성

현시기 부르죠아법학계에서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상가들로서 고대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로마의 키케로를 들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것은 아니였다. 다만 국가통치에서 법치의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리상적인 통치방식》으로 인정하였을뿐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미숙한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고대그리스의 플라톤(B.C. 427−B.C. 347)이였다.[1]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는 법치실현의 리상적인 국가형태에 관한 론의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플라톤은 학문연구의 초기에《정의》가 구현된《리상국가》로서《지혜로운 철학자》에 의하여《철인정치》가 실현되는 군주제국가를 설계하였지만 점차 자기의 견해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닫고 현실속에 존재하는 국가형태들가운데서《리상적인 국가형태》를 그려내려고 노력하였다.

플라톤은 자신이 집필한 도서인《정치가》에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국가형태를 6가지로 분류하였다. 플라톤이 국가들을 형태별로 구분한 기준은《법률의 준수》였다.

그는 우선 법률이 잘 지켜지는 국가를 공정한 국가로 그리고 법률이 무시되고있는 국가를 불공정한 국가로 크게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지배자의 수에 따라 각각 군주정체와 폭군정체, 귀족정체와 과두정체, 민주정체와 폭민정체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군주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는 법률이 지배하는 공정한 국가형태로, 반대로 폭군정체, 과두정체, 폭민정체는 법률이 무시되는 불공정한 국가형태로 규정하였다.[2]

플라톤은 그후 법률이 지배하는 군주정체와 민주정체를 배합한 혼합된 국가형태를 제기하였다. 그가 제기한 혼합된 국가형태는 군주정체에서의《지혜》의 원리와 민주정체에서의《자유》의 원리를 결합시킨것이였다. 플라톤은 민주제도를《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정체로 보고《민주》제도를 수립하려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통치에서《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제도를 수립하려면 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으로서 법치를《민주주의의 실현방식》으로 내세운것이였다.

플라톤의 견해는 그리스의 귀족노예소유자들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었다.

플라톤은 당시 그리스의 정치세력들가운데서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던 귀족노예소유자들과 신흥상공업노예소유자들사이에서 귀족노예소유자들의 지배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1]《법사상사연구 1》허오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년, 67폐지
[2]《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18폐지

위하여 우와 같은 견해를 제기하게 되였던것이다.

플라톤의 이러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그리스 노예소유자계급가운데서 중간층의 리익을 대표하고있었다. 그는 노예주내부에서 신세력과 구세력, 대노예주와 중소노예주사이에 첨예화되여가는 모순과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중재자로서 무너져가던 그리스 노예제도시국가의 붕괴를 막고 노예사회의 안정을 이룩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의 학술적립장은 언제나 타협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그의 이러한 견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론의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였다.[3]

그는 자기의 저서 《정치학》에서 《누가 나라의 주권자로 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가 제기한 문제에서 기본은 나라의 주권자가 다수인가, 훌륭한 몇명의 사람들인가 혹은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법인가 하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옳바르게 제정된 법에 의하여 지배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는《법률에 따라 통치하는것은 신과 리지가 통치한다는것을 의미하지만 개인이 통치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감정의 지배를 면하기 힘들며 집권시기에 편향을 범하기 쉽다. 법률은 바로 일체 정욕의 영향에서 벗어난 신과 리지의 체현이다.》고 하였다.[4]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지만 법은 감정이 없으며 사람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수 있지만 법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수 없으며 따라서 법에 의한 지배는 어떠한 편견도 없다는것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법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법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법치를 곧 다수의 통치로 보고 다수의 통치를 한 개인의 통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립장은 국가정치체제에 대한 견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그는 모든 국가정치체제는 정의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정치체제와 정의에 맞지 않는 변태적인 정치체제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의 정치체제를 가르는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는 최고통치자들의 인원수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의 목적이 공동의 리익인가 아니면 소수의 리익인가 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첫번째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군주정체로, 그의 변태적인 정치체제를 폭군정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량민정체로, 그의 변태적인 정치체제를 중우정체라고 불렀다.[5]

그는 두번째 기준에 따라서는 전체 시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통치형태를 전통적인 정치체제로, 최고통치자 본인이나 극소수의 사람들의 리익을 추구하는 통치형태를 변태적인 정치체제로 규정하였다.

그는 정치적특권의 부패를 막고 전체 시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권력을 구속하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치상의 특권은 자주 군주전제정치나 문벌독재정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어떤 사람도

[3] 《법치사상사》 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21 페지
[4] 《법치사상사》 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25 페지
[5] 《법치사상사》 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26 페지

정치적특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정치체제에서 권력의 팽창을 법으로 구속하고 제약하여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그후 많은 착취계급의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민주주의적인 법치사상》으로 평가되여왔다. 즉 법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법에 의거하여 정치제도상에서 전제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 법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결코 민주주의적인것이 아니였다.

당시 고대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데모크라티아》로 리해하고있었다.《데모크라티아》는 평민, 민중을 의미하는《데모스》라는 어휘와 정치를 의미하는《크라티아》라는 어휘가 결합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룬 합성어로서《다수의 지배》를 가리키는 말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데모크라티아》즉 민주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에 대한 자기의 견해에 기초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형태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의 형태는 한 사람이 통치권을 장악한 군주정체, 소수에 의하여 지배되는 귀족정체, 다수의 통치로 성립한 량민정체로 분류되며 이러한 국가형태들은 모두 법에 의하여 지배될 때 전통적인 좋은 국가형태로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국가형태가 법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그릇되게 운영될 때에는 각각《폭군정체》,《과두정체》,《중우정체》로 전환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량민정체》를《폴리티》라고 한 반면에《중우정체》를《데모크라시》(민주주의)라고 하였다.[6] 그는《중우정체》를《우둔한 백성들의 정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사상은 착취계급의 사상적대변자들이 극구 찬양하는것처럼 결코 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부르죠아정치가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민주주의적인 법치사상의 시조》로 극구 내세우는것은 저들의 반인민적인 정체만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요설에 불과한것이다.

고대시기에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기한 사람들중에는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B.C. 106－B.C. 43)도 있었다.[7]

키케로는 자기의 저서《법론》에서 법을 국가의 기초로 규정하고 국가통치에서《법에 의한 지배》를 중시하는 법치사상을 내놓았다.

키케로의 법치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것과 법률의《절대적권위》에 관한 견해이다.

키케로는 우선 국가에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하며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여야 한다는 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국가란 하나의 법의 공동체》이라고 하면서 법에 의한 지배를 중시하였다.[8]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법치를 플라톤이 주장하던《철인정치》와 대치시키면서《진정한 법률에

[6]《법사상사연구 1》허오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년, 72페지
[7]《법사상사연구 1》허오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년, 84페지
[8]《법사상사연구 1》허오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년, 86페지

의거한 정치가 리상적인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헌법(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전체를 의미함)을 제정하는것과 도덕이 높고 명성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는 리유는 서로 같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공정하고 선량한 사람을 선출할수 없다면 부득불 법률에 의거하는수밖에 없다고 하였다.[9]

키케로는 또한 모든 공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여야 한다는 사상도 제기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사람들사이에 압박이란 있을수 없으며 이러한것들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사람들이 시종 추구하는것은 바로 법률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는것이다. 모든 권리는 마땅히 사람들이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권리라고 할수 없다. …법률은 어느 시기이든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든지 모두 차별없이 꼭같이 대한다.》고 주장하였다.[10]

《법앞에서의 평등》사상을 제기한 키케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인 법치사상의 제창자로 찬양되였다.

하지만 키케로의 법치사상도 민주주의적인 법치사상이 아니였다.

키케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민주정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민주정체가 사람들속에서 극단적인 자유를 조장시킬수 있다고 하면서《극단적인 자유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한다. …민족이든 개인이든 지나친 자유는 극단적인 예속으로 변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정체를 법치에 배치되는 정치체제로 인정하였다.[11]

키케로의 법치사상도 로마 노예소유자계급내부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반인민적인 통치사상이였다.

키케로는 생존기간 노예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하여 혐오스럽게 생각하고있었으며 그에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자연법》의 법칙에 근거하여 보면 모든 사람들은 태여나서부터 자유로우며 예속은《자연법》을 위반한것이지만 노예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해도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넣을수 없다고 떠벌이군 하였다.

이것은 키케로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사상의 집중적인 표현이였다. 그자체가 로마제국의 주요관직들인 안찰관과 법무관에 이어 최고관직인 집정관에 근무하는 과정에 로마제국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던 노예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즉결사형에 처하군 하였다.[12] 이러한 사실은 키케로가 제창한 법치가 누구를 위한것이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여준다.

이처럼 고대 노예사회에서 제창되였던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것이였다.

2.1.2.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부르죠아적견해와 그 반동성

부르죠아법치주의는 근대 부르죠아혁명의 준비기로부터 수행시기에 여러 나라의 많은

---

[9]《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년, 33페지

[10]《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년, 33페지

[11]《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년, 34페지

[12]《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년, 36페지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부르죠아법치주의는 그 발생초기부터 부르죠아시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으로 제창되였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부르죠아적견해를 처음으로 내놓은것은 영국의 법학자 해링톤(1611－1677)이였다.

해링톤은 영국부르죠아혁명의 초시기에 활동한 정치리론가로서 신흥부르죠아지의 요구를 대변하여 봉건군주의 전제권력을 반대하고 부르죠아법치정부의 수립을 처음으로 발기하였다.

해링톤은 법치국가의 징표와 그 실현방도에 관한 론의들에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저서《대양론》에서《법치국가는 응당 자유의 왕국이여야 하며 자유는 자유로운 인민의 권리이기때문에 법치국가의 목표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법치의 실현은 오직 공화국(공화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공화국은 법의 왕국이지 사람의 왕국은 아니다.》고 하면서 법의 왕국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권력이 법률아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3]

해링톤은 법치실현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정치권력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치에 대한 해링톤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르죠아적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치가 실현되는 부르죠아공화국을 수립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즉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공화제에 기초한 부르죠아법치제도하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다는것이였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죠아적견해는 그후 영국의 로크(1632－1704), 프랑스의 몽떼스큐(1689－1755), 루쏘(1712－1778)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였다.

근대 부르죠아혁명의 준비기와 수행시기에 여러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제시된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르죠아시민의 자유와 평등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오직 권력분립에 기초한 자본주의법치국가제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부르죠아계몽사상가들은 봉건전제제도에서 시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주되는 요인은 무제한한 군주의 전제적권력이라고 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보장하려면 정치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분할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설계하고 고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미국독립전쟁시기 반련방파를 대표한 토마스 페인(1737－1809)의 주장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국민의 천부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을 제정하는것을 통하여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정부가 헌법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다면 독단과 전횡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법치국가는 자유의 왕국》이라고 한 영국의 계몽사상가 해링톤의 말을 빌어 전제군주제에서는 국왕이 법률이지만 자유국가에서는 법률이 마땅히 국왕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경우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4]

[13]《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5(2016)년, 44페지
[14]《법치사상사》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76 페지

근대부르죠아혁명시기에 여러 계몽사상가들에 의하여 제창된 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견해들은 어느것이나 다 부르죠아사적소유제도를 옹호하고 부르죠아적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반인민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기 제국주의반동들은 미국식 《법의 지배》사상을 법치의 표본으로 내세우면서 《법치와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간판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저들의 지배책동을 합리화하고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외곡된 견해들을 조작류포시키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배책동을 합리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은 1959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자유사회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a Free Society")라는 표제밑에 소집되였던 《세계법학자대회》에서 채택한 《델리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15]

《델리선언》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장황하게 라렬하고 현대자본주의법치주의를 미국식 법의 지배사상에 기초하여 종합체계화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렬거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개인은 부인할수 없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것,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개인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로서 독립적인 재판제도와 변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 등을 법치국가제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렬거하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이것이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치국가제도의 대원칙》이나 되는듯이 요설을 퍼뜨리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려면 자본주의법치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자연지리적환경과 조건, 사회정치제도나 경제문화발전의 력사적전통과 그 수준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런것만큼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도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선택되여야 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회제도에서나 그리고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 통용되는 법치실현의 만능의 방법과 제도란 존재할수 없다.

더우기 한줌도 못되는 대독점자본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자본주의법치제도를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 이식시키려는것은 력사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는 반인민적인 범죄이다.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세계법학자대회》에서 합의된 현대부르죠아법치의 주요원칙이라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군림한 미국식 법의 지배리론을 국제적범위에서 확인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변호론일뿐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착취사회에서 제창된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론의는 어느것이나 다 법치를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을 다스리는데서 《유리한 통치방식》으로 내세우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것이다.

---

[15] 《법치사상사》 최일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 105(2016)년, 112 페지

2.2.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견해와 그 과학성

법치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2.2.1.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적해명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김일성**전집》 제65권 405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진짜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이다.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정치이며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가짜민주주의, 독재통치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킨 정치가 바로 참다운 민주주의정치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가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 특권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로 될수 없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수많은 착취계급의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여있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원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란 말은 고대그리스어로 《평민》을 의미하는 《데모스》와 정치를 의미하는 《크라티아》가 결합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다수의 지배》라는 뜻을 담고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개인(소수)의 독재와 전횡을 반대하고 인민대중(다수)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리념으로 세상에 나왔다. 민주주의는 말뜻 그대로 《다수의 지배》,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될것을 요구하는 정치리념이다.

지난 시기 많은 정치사상가들은 개인 또는 소수에 의한 정치를 독재정치, 다수에 의한 정치를 민주주의정치로 리해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군주에 의한 정치를 전제주의정치, 독재정치로, 민회나 원로원에 의한 정치를 공화제정치, 민주주의정치로 보았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의회정치, 대의제정치가 《민주주의적인 정치》인듯이 외곡선전되고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들이 마치도 민주주의의 대변자라도 되는듯이 요술을 부리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기만적인 책동을 폭로분쇄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사회관리방식, 정치방식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65권 404～405페지)

일반적으로 국가의 활동방식은 해당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국가의 활동방식은 민주주의로 되며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의 주인행세를 하는 국가의 통치방식은 관료주의, 독재로 된다.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과 민주주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낡은 착취계급의 국가정권을 뒤집어엎고 자기의 손으로 일떠세운 인민의 국가이다. 인민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것을 력사적사명으로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인민적성격과 복무자적사명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인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한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자신의 정치인 민주주의를 자기 활동의 기본방식으로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는 리론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독창적인 리론이다.

지난 시기 착취계급의 리론들에서는 인민대중을 정권의 대상으로 보고 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을 전개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하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사회주의국가활동의 방식은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하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로 되며 그것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자면 그것을 침해하는 극소수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해주려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반대하여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계급적원쑤들에게 무자비한 독재를 가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는 과학적해명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2.2.2. 사회주의법치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독창적인 법치국가건설사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법치국가로 건설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사상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여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①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라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법의 제정과 집행의 전과정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는데로 지향복종되며 높은 준법의식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자각적인 법무생활에 의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주의국가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법으로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국가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근본목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데 있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국가사회제도를 옹호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물질적기초인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철저히 보호한다. 그리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와 위법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가 법으로 나라를 관리하는 법치를 실시한다는것은 곧 모든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두철미 법대로 진행되여나감으로써 법에 반영되여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는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근본목적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또한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는 사회주의국가이다.

법의 모든 내용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으로 관통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기 위한 법치도 응당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집행의 담당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자신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통하여 법에 반영

되여있는 자신들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자신들의 활동으로 직접 실현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자각적이며 의무적인 준수집행은 인민대중 자신의 삶의 요구로 되고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집행은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준수집행은 단순히 의무성만을 띠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준수집행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을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은 자신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 그 실현에 복무하는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엄있게 대하며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을 자신들의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있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의하여 법규범과 규정들이 엄격히 준수되고 집행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여나가는 국가이라는데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법치국가이다.

②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자기의 혁명적본질로부터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첫째로,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반드시 당의 령도밑에 건설되여야 한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법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다.

정치와 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내용과 형식,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식은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며 수단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치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그 실현의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 법의 해석과 적용을 비롯한 법건설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철저히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은 바로 정치와 법의 이러한 호상관계를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생명이다.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이라는데 《법지상주의》를 제창하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둘째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이라는데 있다.

원래 법치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려는 목적밑에서

진행되였다. 오늘 현대자본주의세계에서 법치에 대한 론의들은 어느것이나 다 민주주의와 련관되여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자본주의법치국가를 《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사회를 《법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미화분식하고있다.

법치가 민주주의적인 사회관리방식이고 법치국가가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라면 마땅히 력사발전의 주체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된 인민의 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법치국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이다.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자본주의나라의 국회를 사회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대표기관》으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국회에서 채택되는 법률에 《국민전체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는듯이 기만하고있다. 그러면서 《국민전체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초계급적인 법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법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법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적이 없으며 오직 자본가계급의 리익실현에만 복무하여왔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적인 법치는 오직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정치이라는데 사회주의법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으며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한 법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는데 복무하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셋째로, 인민대중의 법적의무성과 함께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의거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이라는데 있다.

어떤 류형의 국가나 법치를 하는 목적은 전사회적으로 제도와 질서를 세우려는데 있다.

고대시기로부터 현대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력사의 여러 단계에서 제창되였던 법치사상들은 그 계급적성격과 법치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사회적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정연한 제도와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계급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아무리 법치에 대하여 떠들어도 전사회적으로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공고하게 수립할수 없다.

제도와 질서가 전사회적으로 공고하게 확립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하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폭력과 강권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수립된 제도와 질서는 공고하지 못하며 그러한 사회는 쉽게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게 된다.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자각적인 준수집행은 오직 모든 사회성원들의 리해관계가 통일되여있고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법에 대한 준수집행은 의무성을 띤다. 의무성을 떠난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법준수집행에 대한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에 기초한 의무성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지니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사회적으로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공고하게 수립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의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질서, 법질서가 철저히 확립된 법치국가이라는데 폭력과 강압, 회유와 기만으로 통치계급의 지배질서를 강제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치국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이라는데 극소수 독점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 본질적특징이 있다.

2.2.3. 사회주의법치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해명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사회주의법치의 혁명적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을뿐만아니라 그 호상관계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혀주었다.

①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69페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사회생활이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모든 내용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로 일관되여있는것만큼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곧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으로 되는것은 우선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전사회적으로 확립된 정연한 사회질서속에서 보다 원만히 보장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며 규률생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정연한 사회질서속에서만 원만히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게 전사회적규범인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확립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공동생활준칙인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적인 정치조직생활을 진행하며 전사회적인 규률생활을 진행해나간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정연한 사회질서가 전사회적범위에서 확립되게 되며 이러한 질서속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실현되여나간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정치와 국가관리에 일상적으로 직접 참가하여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 가장 존엄있는 정치생활을 진행하게 되며 사회경제생활과 사회문화생활에서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법적실현과정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정권기관 일군들속에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되여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사회주의법은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로 지향되도록 그들의 권한과 임무, 활동방식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그리고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여있는 사업절차와 방법, 권한과 임무에 어긋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서도 엄중한 위법행위로 보고 그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할데 대하여서도 예견하고있다.

그러므로 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곧 국가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며 보호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리익이 더욱더 보호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된다.

②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회주의법치의 실현과정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법치의 실현과정이라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국 사회주의법무생활이자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근본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곧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조직생활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무생활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이 곧 사회주의법치의 실현과정으로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로부터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법치이다.

법이 인민을 지킨다는것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해주고 정권기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며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권력적으로 보호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이 법을 지킨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들을 의무적으로,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사회주의법에 반영된 자신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사회주의법치를 원만히 실현해나가려면 결국 정권기관의 모든 활동이 사회주의법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모든 사회적활동, 사회생활이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되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이 사회주의법무생활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곧 사회주의법치의 실현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사회주의법치의 실현과정으로 되는것만큼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치에 의하여 보장되게 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법치에 의하여 보장되는것만큼 사회주의국가는 국가관리, 사회관리에서 법치를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해줄수 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사회주의법치에 의하여 보장되며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위대한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사상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리론도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도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위대한 우리 당만이 내놓을수 있는 주체적인 사상리론이다.

3. 결 론

법치는 어느 사회에서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관리방식, 국가관리방식으로 인정되여왔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려면 국가관리, 사회관리를 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이 법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계급사회에서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듯이 《만인을 위한 초계급적인 법치》도 있을수 없다. 민주주의가 계급적성격을 띠듯이 법치도 항상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계급적지배를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법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사회관리방식으로 되려면 사회력사발전의 주체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사회관리방식으로서의 참다운 법치는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실현에 복무하는 사회주의법치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사회의 극소수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가짜민주주의인것처럼 자본주의법치는 극소수의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률제도적으로 유린하는 기만적인 법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은 온갖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차고넘치는 자본주의사회를 《민주주의적인 법치》사회로 미화분식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민주》와 《자유》를 보장해주려면 부르죠아법치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저들의 법치제도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만민복지사회》로 미화분식하고있는 자본주의《법치사회》는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범죄, 사회악이 범람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도 여지없이 유린말살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되는 민주주의의 지옥이다.

극단한 부르죠아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온갖 사회적불평등을 법률제도적으로 강요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가 멸망하는것은 인류력사발전의 법칙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진정한 법치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비로소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썩어빠진 부르죠아법치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의 《법치》타령에 기초한 반사회주의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법치, 민주주의, 법무생활, 독재, 권력분립

증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리론적문제

박사 부교수 권 영 민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23페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소송은 제기된 사건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법적요구에 맞게 취급처리해나가는 과정(활동)이다. 제기된 사건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법적요구에 맞게 취급처리하자면 사건의 모든 사실사정을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결국 사건의 취급처리과정 즉 소송과정은 제기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증명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로부터 증거와 그에 기초한 증명과정에서 나서는 원리적, 방법론적문제를 연구하는 증거리론은 과학적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증거가 형민사소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시기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였으나 아직까지 리론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해명되지 못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가운데서도 소송에 리용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증거의 본질문제를 비롯하여 증명의 대상과 책임문제, 증명의 요구와 록음, 록화자료의 리용문제 등은 오늘도 학술적론의가 계속되고있고 실천적의의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2. 본 론

2.1. 증거의 본질과 관련한 문제

소송에 리용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증거의 본질문제는 증거리론 연구의 출발점, 소송활동의 리론적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여야 증거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증거리론연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소송활동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오늘 소송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를《하나의 진실적인 사실로 가정하여 다른 한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리유로 되는 당연한 사실》이라는 리유설,《증거는 객관사실 그자체가 아니라 객관사실이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된것》이라는 반영설,《증거는 존재라고 부를수 없고 의식이라고 할수도 없는 사건정황에 대한 정보》라는

정보설 등 각이한 견해[1]들이 제기되고있다.

증거를 그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를 근거짓는 리유로 보거나 사람의 의식에 반영된 사실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는것은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라고 볼수 없다. 그것은 증거를 순수 론리적 또는 주관적견지에서 규정하거나 사건과의 련관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증거의 범위를 확대하는것으로는 소송의 특성에 부합되는 증거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질수 없으며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에도 도움을 줄수 없기때문이다.

증거라는 말을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증명하려는 근거, 증명의 근거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 과학적연구에서 흔히 증거라는 개념을 널리 쓰고있으며 자기가 알고있는 사실을 들어 어떤 다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군 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증거는 일반적인 증거의 개념을 가지고 리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소송의 특성과 관련된다. 소송은 제기된 사건의 해명을 위한 단순한 증명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문제, 재산상 권리와 리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렵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제기된 사건은 확실한 근거와 법적형식에 맞는 과학적인 증거들에 기초하여 증명되여야 한다.

소송에서 증거는 법적절차에 따라 수집검토되여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는 근거로 되는 사실이다.

증거가 없이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증거에 기초하여서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수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릴수 있다.

증거가 법적절차에 따라 수집검토된 사실이라는것은 증거가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수집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된 사실이라는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이 산생되며 이것들은 각이한 증거원천들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 과정에 일부 자료들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외곡되거나 증거적가치가 상실 또는 감소될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해결의 기초로, 판결의 토대로 삼을수 없다.

이로부터 사건을 담당한 법일군들은 수집 또는 제공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확인하여 그가운데서 객관성과 련관성, 합법성을 가진 사실들을 선택하며 그것들을 사건해결의 근거로 리용한다. 이렇게 검토확인되여 사건해결을 위한 근거로 리용되는 사실이 바로 소송에서의 증거이다.

소송에 리용되는 증거를 이와 같이 리해하는것은 소송증명과정에 불필요한 자료들이 끼여드는것을 막고 제기된 사건을 신속정확히 해결하며 사건을 담당한 법일군들이 증거의 수집과 리용에서 법적요구와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자극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2.2. 증명의 대상과 관련한 문제

증명의 대상에 관한 문제는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는데서 증거로 반드시 조사확정하여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거로 증명하여야 할것인가 즉 증명의 대상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증명의 대상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져야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법일군들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증명활동을

[1] Criminal Evidence, by John A.Andrews and Michael Hirst, Sweet ＆ Maxwell, London, 1992. p. 37.

목적지향성있게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증명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증명대상과 증거사실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증명대상과 증거사실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있다.[2] 그 리유는 모든 증거는 반드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검토확인되여야 하는것만큼 다른 증거에 의하여 검토확인되여야 할 증거사실은 곧 증명의 대상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증명의 대상과 증거사실과의 관계에서 증거사실은 어디까지나 증명대상을 해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증명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증거는 객관성과 련관성, 합법성을 자기의 본질적속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건해결에 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반드시 객관성과 련관성, 합법성을 가져야만 사건을 조사해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로 될수 있다. 물론 임의의 증거에 대하여 그의 객관성과 련관성, 합법성이 론의되거나 검토확인이 필요할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루어지는 검토되고 검토받는 관계는 증명대상과 증거사실과의 관계가 아니라 증명대상을 밝히는데 리용되는 증명수단이 증거로서의 자격을 가지는가를 해명하기 위한 관계이다. 그리고 증명대상은 현재 알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사실로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사실이며 증거사실은 과학적인 증명수단을 통하여 얻어진 사실로서 이미 알고있는 확정된 사실이다.

만일 증거사실도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것들사이의 계선이 모호해지며 실천적으로는 사건처리과정에 증명의 대상을 부단히 산생시킴으로써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따라서 증명의 대상과 증거사실을 동일한 개념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증명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수속법상사실을 증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실체법상사실이 증명의 대상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는 견해들이 일치하다. 그것은 소송증명이 결국은 실체법적으로 규제된 법률관계를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수속법상사실을 증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있다.

수속법상사실을 증명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리유를 크게 3가지로 들고있다.[3]

첫째로, 증명대상은 증명활동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제기된 사건의 해결을 순조롭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것만큼 증명대상을 실체법상사실 즉 사건의 실제적해결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실에 국한시켜야 소송의 담당자들이 증명에서 선후차를 바로 규정하고 사건을 주동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둘째로, 수속법적측면에서 밝혀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대상과 혼돈시킬수 없다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많은 수속법상사실은 해명하지 않아도 되거나 법일군들이 흔히 알수 있는 사실이며 어떤 사건에서나 모두 증명을 필요로 하는 수속법상사실에 맞다드는것은

[2] Criminal Evidence, 4th edition. Richard May, Sweet ＆ Maxwell Ltd, 1999. p. 98.
[3] Criminal Evidence, 4th edition. Richard May, Sweet ＆ Maxwell Ltd, 1999. p. 101.

아니라는것이다. 만일 이러한 수속법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수속법상사실은 증명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셋째로, 수속법상사실에 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해명》이나 《희망》에 불과하기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증명대상은 응당 실체법상사실에 국한되여야 하며 수속법상사실은 증명대상에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나 리론실천적으로 볼 때 수속법상사실은 증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우선 소송법은 수속법으로서 수속법상사실을 해명하는것이 소송담당자들과 당사자들이 법적수속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실체법상사실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상사실을 증명하는것은 법적수속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소송과정에 제기되는 법적수속절차의 위반사실 즉 수속법상사실도 증명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건관계자들이 수속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게 함으로써 실체법상사실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수속법상사실들이 분쟁의 대상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수속법상사실에 대한 증명은 단순히 《해명》이나 《희망》에 불과한것이 아니며 또한 해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수속법의 위반사실은 소송에서 상소, 항의의 사유로 될수 있으며 일련의 경우 채택된 판결, 판정을 취소시켜야 할 사유로 된다. 실례로 1심재판에서 수속법의 위반은 해당 판결을 취소시켜야 할 사유로 되며 이 경우 제2심재판소는 1심재판소의 수속법상 위반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예심, 재판활동에 대한 준법성감시를 중요한 임무로 하고있는것만큼 그들이 소송법적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수속법상사실은 증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이 합리적이다.

2.3. 증명책임과 관련한 문제

증명책임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것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증명책임문제를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소송의 류형과 사건의 성격, 매 사건의 개별적특성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사건해결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서로 각이하기때문이다.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로부터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으며 지어는 그것을 방해할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증명책임을 옳게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증명과정에 참가하도록 하지 않으면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기대할수 없다. 이것은 사건을 옳게 해결하자면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명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증명책임이 증거를 수집제공하여 주장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불리익을 입을수 있는 위험부담인가 아니면 소송상의 권리나 의무 혹은 임무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늘 많은 나라에서 각이한 소송형식을 취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증명책임을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입게 되는 위험부담(부담설)이라고 하거나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소송상의무(의무설)나 권리(권리설)라는 견해들이 제기되고있다.[4]

일반적으로 책임이라는 말은 두가지 의미로 리해할수 있다.

하나는 맡겨진 임무나 의무 또는 맡아서 하여야 할 임무나 의무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사태나 결과가 빚어진데 대하여 마땅히 추궁을 받거나 의무를 지게 되는 부담이나 제재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증명책임이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입게 되는 위험부담인가 아니면 증거를 수집, 제공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임무나 의무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학자들은 증명책임이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입게 되는 위험부담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피하려면 마땅히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하는 불리한 결과가 차례진다는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명책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건의 진상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는가에는 관계없이 증명책임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떠말김으로써 사건의 실제적진실의 해명과 그에 기초한 사건해결을 외면하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증명책임은 증거를 수집, 제공하여 제기된 사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임무나 의무로 보아야 한다.

사건의 실제적진실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역할만으로 밝혀질수 없다. 당사자들은 사건해결에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으며 증거를 충분히 제공할수도 있고 증거의 제출을 방해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송을 당사자들의 적극성에만 내맡긴다면 사건의 실제적진실이 정확히 밝혀질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거의 수집과 사건사실의 증명에서는 재판소의 적극적인 활동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런데 증명책임을 당사자들의 책임으로만 보면 재판소의 증명활동을 론할수 없게 되며 또 증명책임을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입게 되는 위험부담으로 보게 되면 재판소가 사건사실에 대한 증명활동을 하는 경우 재판소가 증명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였을 때 불리익을 입게 된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재판소에도 지워져있으며 소송활동에서 재판소의 증명책임은 위험부담으로가 아니라 사건의 실제적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로 보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지니게 되는 재판소의 증명책임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들의 증명책임은 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여야 할 소송상의무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소추자, 담당자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받고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송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에 맞게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소송상의무를 지니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송상의무를 지녔다고 하여 해당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검사나 개별적당사자들에게 묻지 않는다. 물론 실천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청구근거로 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4] Evidence Law. 3rd edition. Fan, Chong Yi. Law Press. 2004, p. 280.

그러나 이 경우는 원고가 자기에게 부과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해당한 청구가 증명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사건을 기각하는것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재판소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권리와 리익을 실천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온갖 침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사명으로부터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을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제공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입게 되는 위험부담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소송상의무로 보아야 한다.

제기된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철저히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형민사소송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사건을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취급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나라 형민사소송의 이러한 형식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제도자체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국가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일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권리를 줄뿐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튼튼히 담보한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명목상의 권리만 주고 그 행사는 관계자들의 일로 내맡기고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본분으로 하는 국가기관일군들이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일군들은 자기의 본분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사실사정을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증명책임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들이 책임지고 증명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증명책임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증거수집(제공)책임과 증명책임을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자는 견해(동일설),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견해(병렬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두 개념사이에는 일종의 차례관계가 있다는 견해(차례설) 등이 제기된다.[5]

《동일설》에서는 증명책임이 증거를 수집(제공)하며 사건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누가 지는가 하는 개념으로서 증거수집(제공)책임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두 개념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명책임과 증거수집(제공)책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증명책임은 증거를 수집 혹은 제공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이지만 증거수집(제공)책임은 증거에 의한 증명활동을 배제하고있는 책임이기때문이다.

---

[5] The Law of Criminal and Civil Evidence: Principles and Practice, by Martin Hannibal and Lisa Mountford Harlow, Essex Longman. 2002. p. 245.

《병렬설》은 증명책임과 증거제공책임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증명책임은 형사소송에서 검찰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범죄혐의자나 피심자(피소자)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여야 할 법적의무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혐의자와 피심자(피소자)는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다. 증거제공책임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들이 재판소에 증거를 제공할데 대한 책임이다. 결국 증명책임은 형사소송에서 검찰기관이 지는 책임이며 증거제공책임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지는 책임으로서 증명책임과 증거제공책임은 완전히 구별된다는것이다.

증명책임과 증거제공책임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책임으로 갈라놓는것은 옳지 않다. 이 견해대로 한다면 형사소송에는 증명책임만 있고 증거수집(제공)책임은 없으며 민사소송에는 증거제공책임만 있고 증명책임은 없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차례설》에 의하면 증거제공책임은 증거를 찾아내여 제기하는 책임을 말하며 증명책임은 증거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책임이다. 다시말하여 증거제공책임은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와 같은 당사자들이 지는 책임이며 증명책임은 사건을 담당한 사법기관이 지는 책임이다.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 제공한 후에 사법기관이 제기된 자료들을 심의,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것만큼 두 개념사이에는 일종의 차례관계가 존재한다. 결국 증거제공책임과 증명책임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그것들사이에는 순차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는것이다.

이 견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검찰기관의 증명활동과 재판소의 증거수집활동을 무시한 일면적인 견해이다.

《병렬설》과 《차례설》은 증명책임과 증거제공책임을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의 각도에서 구분한것으로서 두 개념들사이의 련관을 보지 못한 결함이 있다.

증명책임과 증거수집(제공)책임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증명책임은 증거수집(제공)책임을 포섭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증거수집의 목적이 증명을 위한것이며 증명은 수집(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활동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수집(제공)책임과 증명책임을 서로 련관이 없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되며 증거수집(제공)책임을 사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책임속에 포함시켜 리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은 증거를 수집 또는 제공하며 증거를 리용하여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소송담당자들과 당사자들의 임무와 의무이다.

2.4. 증명의 요구와 관련한 문제

증명의 요구란 증명의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증거를 리용하여 제기된 사건사실을 증명하는데서 도달해야 할 정도를 말한다. 증거리론에서는 이것을 증명표준이라고도 한다.

증명의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일부 나라 학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의 배제》, 《우세증명》이라는 개념을 자주 리용한다. 즉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배제》의 정도에 도달할 때, 민사소송에서는 《우세증명》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는것이다.[6]

[6] Law of Evidence for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by Irving J, Klein St.Paul: West pub. Co, 3rd edition. 1989. p. 122.

형사소송에서의《합리적인 의심의 배제》에 대하여 그들은 판사의《도덕적확신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수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합리적인 의심의 배제》라는것은 약한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가상한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우세증명》은 증명책임을 진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총체적인 분량이 대방당사자를 릉가하거나 보다 확신성있게 되면 그의 증명책임은 완성된것으로 되며 반대로 쌍방당사자가 제공하는 증거분량과 같거나 반증자의 증거분량이 더 많은 경우 증명책임을 진 당사자가 소송에서 지게 된다는것이다.

증명의 요구와 관련한 이러한 견해는 결국《소송상효률》의 명목밑에 사건의 실제적진실이 아니라 형식적진실을 추구하는 당사자주의소송제도를 합리화하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실현시켜주는것을 소송의 목적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증거제도는 사건의 모든 사실사정을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을 증명의 요구로 규정하고있다.

사건을 완전하게 밝힌다는것은 증명하여야 할 사실들을 빠짐없이 밝혀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증거로 조사확정하여야 할 증명의 대상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증명하여야 할 사실로는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 형벌량정과 관련한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에 따라 각이한 실체법적 및 수속법적사실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건을 완전하게 밝힌다는것은 제기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사확정하여야 할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밝힌다는것이다.

사건을 정확하게 밝힌다는것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로 밝혀야 할 사실을 증명한다는것이다.

확실한 증거란 증거의 본질적속성을 다 갖춘 증거 즉 객관성, 련관성, 합법성의 요구를 다 갖춘 증거를 의미한다. 이것은 증거의 질, 속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결국 확실한 증거로 증명한다는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얻어진 사건과 객관적으로 련관된 과학적인 증거로 제기된 사건사실을 증명한다는것이다.

충분한 증거란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 이것은 증거의 량에 관한 문제이다.

제기된 사건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량은 법적으로 규제할수 없다. 그것은 매 사건마다 증명하여야 할 사실이 서로 다르고 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증거의 종류가 각이하며 사건조사과정에 어느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겠는가 하는것도 예견할수 없기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현장과 그밖의 장소들에는 다양한 흔적, 증거물이 생겨나게 되며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해당한 사건사실이 반영된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여 밝혀야 할 사실을 증명한다는것은 실천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증명에 리용되는 증거는 전부가 아니라 충분한 량만큼 수집하여 리용된다.

충분한 량이라고 하여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건사실을 증명할수 없다. 반대로 얼마 안되는 증거라도 질이 보장되면 해당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는 사건해결에 필요하고 충분한 량만큼 수집하며 특히 질적측면에 주의를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요구는 다같이 사건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힌다는것으로 규제되여있지만 형사소송에서 증명의 요구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매우 높다. 그것은 형사소송이 사람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소자와의 화해나 소송의 포기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사실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는 제기된 사건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증명하여야만 피소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부족, 사건성립불가능의 리유로 예심반송, 사건기각,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다.

2.5. 록음, 록화자료의 리용과 관련한 문제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범죄와의 투쟁을 보다 과학화, 기술화하자면 발전된 과학기술적방법들과 현대적인 기술기재들을 소송실천에 적극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록음, 록화자료는 록음기, 촬영기, 감시카메라와 같은 현대적인 기술기재들과 방법을 리용하여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사정을 기록한 자료들이다.

록음, 록화자료는 사건의 발생발전과정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재현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것을 리용하는데서는 리론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가운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촬영한 록화자료나 우연히 범죄현상을 목격한 제3자가 촬영한 록화자료, 사건관계자가 제공한 록음, 록화자료를 증거로 리용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범죄가 감행될수 있는 은행이나 상점, 도로 등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수록된 록화자료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우연히 범죄현장을 지나다가 범죄현상을 목격하고 그것을 록음, 록화한 자료들은 사건담당자나 범죄자 등의 주관적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고착된 자료들로서 사건해명에서 증명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사건관계자들이 제공한 록음, 록화자료 역시 그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위조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지만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토확인되면 사건사실을 밝히는데서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록음, 록화자료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사건담당자나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믿음성이 없으며 따라서 사건을 립증하는 증거로 리용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록음, 록화자료가 위조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증거로 리용할수 없다는것은 일면적견해이다. 그것은 록음, 록화자료가 아닌 증거물이나 증거문서, 감정결과, 증인의 말도 역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외곡되거나 변질 또는 상실될수 있기때문이다.

실례로 증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될수 있고 일련의 요인으로 다른것과 교체되거나 변화될수 있다. 증인의 말, 감정결과도 증인 혹은 감정인의 감각, 지각상태와 기술실무수준, 사건에 대한 리해관계정도 등에 따라 외곡되거나 잘못 표현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들이 증거로 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 어떤 자료도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로 되자면 철저히 검토확인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록음, 록화자료도 철저히 검토확인되여야만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로 될수 있는것만큼 위조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증거로 리용할수 없다는것은 옳은 견해라고 볼수 없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음성과 화상위조에 대한 식별은 전혀 불가능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로 촬영한 록화자료나 우연히 범죄현상을 목격한 제3자가 촬영한 록화자료, 사건관계자가 제공한 록음, 록화자료들은 반드시 검토평가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검토확인되면 얼마든지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로 리용될수 있다.

이러한 록음, 록화자료를 사건해명을 위한 증거로 리용하자면 그것이 법적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수집되였는가, 자료수집에 리용된 기술기재가 완전하고 정상인가, 기술수준이 선진적인가, 해당 자료가 수집된 시간과 장소, 그 주위환경이 어떠한가 등을 철저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그것은 록음, 록화자료의 수집이 합법적이고 증거력이 철저히 검토평가되여야 사건해명에 리용될수 있으며 리용된 기술기재의 정상성여부와 기술수준이 수집된 자료의 과학성과 정확성보장에 결정적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수집당시의 주위환경과 시간, 지형, 공기의 건습도, 환경의 소란스러운 정도 등이 해당 자료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록음, 록화자료가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될수 있다고 하여 그것만 있으면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반드시 수집된 다른 증거와의 련관속에서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로 리용될수 있다.

이와 같이 록음, 록화자료는 철저히 검토확인되면 사건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증거로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

3. 결 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형민사소송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해명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며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소송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건해결의 기초, 판결의 토대로 삼아야 할 증거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기초하여 사건취급처리의 전과정에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증명대상과 증명책임을 바로 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것을 증명의 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소송실천에 적극 도입하여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소송상효률》을 운운하며 사건의 실제적진실이 아니라 형식적진실만을 추구하는 당사자주의소송에 비해볼 때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증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소송리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해설론증함으로써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증거, 증명대상, 증명책임, 증명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한 의 연

1. 서 론

지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국투자를 리용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 주로 외국투자가(기업)를 상대로 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부가 외국투자가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의 투자를 받아들여 어느 한 지역이나 대상을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였다. 다시말하면 기업으로서의 외국투자가들이 단독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개발하거나 그 나라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주되는 개발방식이였다. 당사자의 견지에서 볼 때 외국의 기업과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부가 개발의 당사자이며 이런 경우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법들을 제정실시하고 일정한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만드는것으로 개발을 위한 법률적환경을 보장하였다.

조선에서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조선의 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법들을 제정하여 발포하였으며 여러 지역을 외국투자 및 개발에 유리하게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였다.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제정실시하고 일정한 지역을 특별히 수립된 법제도에 따라 경제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특수경제지대로 만드는것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에 의한 개발과 관련한 법률적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외국기업들을 당사자로 하여 그들의 투자로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개발하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란 두 나라 정부가 어느 일방 국가의 일정한 지역을 함께 개발하고 관리한다는것을 말한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일정한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만드는것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될수 없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의 두 당사자가 개별적인 기업이 아니라 다같이 국제법적으로 평등한 독자적인 정부인것과 관련된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은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는것외에도 두 당사자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른 법적권리의무를 확인하는 국제법이 마련되고 그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상 일치성보장문제가 해결되여야 보장될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보장한다는것은 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환경을 원만히 마련한다는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에서는 라선지대와 황금평, 위화도지대를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두 나라 정부가 라선지대와 황금평, 위화도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하여 취한 실천적인 법적조치들은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한것으로 된다.

지난 기간 국제투자 및 개발과 관련한 법률적연구는 대부분 민간급 투자가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것을 전제로 하거나 그것을 념두에 두고 수립된 개별적국가의 국제투자와 관련한 법제도들과 특수경제지대들에 대한 연구였다. 라선지대와 황금평, 위화도지대에 대한 조중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적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도 일정하게 진행되였다. 그런데 그 연구는 대부분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이 지대에 대한 조중 두 나라사이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내용적으로 서술한것이다.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의 당사자가 정부라는데 주목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견지에서는 연구가 아직 미약하였다.

론문에서는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조중 두 나라 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하여 취한 실천적인 법적조치들을 놓고 서술하려고 한다.

2. 본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들사이에 경제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면 서로 부족한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쳐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정치적단결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510페지)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두 나라 정부의 권리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것이다.

개별적인 기업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권리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하자면 그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 국제법적문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한 국제법적문건은 두 나라 정부가 체결하는 합의이다.

우선 조중 두 나라 정부는 2010년 11월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두 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데서 두 나라 정부가 지니는 권리의무의 기본내용을 확인하였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에서 협정체결의 목적을 지적하고 조중 두 나라 정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지역, 정부간 공동사업체계와 공동관리기구조직, 투자가들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 조선의 주권존중, 투자가에 대한 대우, 법규의 안정성과 투명성보장, 개발기업의 선정, 제3국투자가들의 투자장려,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맺은 협정이나 합의, 계약들로

인하여 산생되는 분쟁해결방법, 협정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원칙, 협정의 수정보충과 유효기간, 협정의 페기절차와 방법, 효력발생 등에서 두 나라 정부가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였다.

이 협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할데 대한 주요법적권리와 의무를 확인한 국제법적인 기본문건으로, 앞으로 쌍방사이에 맺어지게 될 모든 합의의 기초문건으로 된다.

또한 조중 두 나라 정부는 보충협정을 비롯한 여러 합의문건을 체결함으로써 두 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데서 두 나라 정부가 지니는 보다 구체적인 국제법적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 및 협조의 내용이 두 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것인것만큼 그에 부합되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것은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두 나라 정부가 지니는 보다 구체적인 국제법적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합의문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법규제정과 관련한 보충협정》,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두 나라 중앙정부들사이에 체결된 합의문건에 기초하여 라선시인민위원회와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사이,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중국 료녕성 인민정부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합의서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법규제정과 관련한 보충협정》은 2011년 6월에 체결되였다.

보충협정은 두 나라 정부사이에 체결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법규제정을 통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개발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투자가들의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것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규제한 합의이다.

보충협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법규제정을 위한 협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법규제정의 근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 세칙, 준칙의 제정 및 수정보충, 국경통과보장조치, 관련법규제정원칙, 지대개발방식, 보충협정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나 의견상이의 해결방법, 보충협정의 효력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은 2010년 12월 쌍방의 대표들이 마주앉아 작성한 초안을 각각 자기 정부의 비준을 받는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총계획요강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호혜공영의 경제무역협조를 확대심화시키는것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적인 념원과 장기적인 리익에도 부합되는것》이며 공동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작성을 지도하고 기업투자를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두 지대에 대한 총개발목표,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요강,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요강, 두 지대에 대한 관리 및 정책보장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총계획요강에는 두 지대의 산업발전방향과 산업배치 및 발전목표, 산업발전중점, 기초시설건설, 정부간 협조지도체계와 두 경제지대 공동관리체계 및 개발경영체계의 세 단계로 된 협조체계의 설립, 토지, 금융, 인원, 세관통과, 투자보호, 산업입주허가, 기업경영 등에서의 정책적지지 및 보장조치 등에서의 쌍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규제되여있다.

조중 두 나라 지방정부들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들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쌍방의 권리의무를 확인한 국제법적문건이다.

라선시인민위원회와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사이,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중국 료녕성 인민정부사이에는 조중 두 나라 중앙정부들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여 일련의 합의서들이 체결되였다.

2011년 1월에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료녕성 인민정부사이에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설립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였으며 같은 해 3월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길림성 인민정부사이에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설립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였다.

이 합의서들에서는 지방정부간 공동지도위원회의 구성, 사업내용, 소집절차와 방법, 공동지도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문건작성언어, 수정보충, 합의서의 효력발생시기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2012년 8월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료녕성 인민정부사이에 《황금평경제지대 관리위원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길림성 인민정부사이에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였다.

이 합의서들에서는 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소재지, 설립 및 운영원칙, 구성 및 사업분담, 관리위원회의 상무회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면적,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규약, 예산, 준칙제정, 기업에 대한 특혜, 재정수입리용범위, 합의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중 두 나라 지방정부들사이에 지대개발계획들도 작성비준되였다. 2012년 3월 평안북도인민위원회와 료녕성 인민정부사이에 황금평경제지대 세부계획이 비준교환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길림성 인민정부사이에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총계획, 라진항산업구 개발총계획, 선봉백학산업구 개발총계획이 비준교환되였다.

황금평경제지대 세부계획에는 계획의 근거와 원칙, 현실태와 개발조건, 총체적인 구상과 발전목표, 산업의 발전과 배치, 공간적구조와 부지배치, 하부구조의 건설,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총계획에는 합작방식 및 관리기구, 산업기능, 건설목표와 총배치, 산업발전과 산업구건설, 중요하부구조건설계획, 항구건설과 해안선리용계획, 정책지지와 보장대책, 법률적환경보장대책, 협상으로 해결할 사항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라진항산업구 개발총계획과 선봉백학산업구 개발총계획에는 총적발전성격과 발전목표, 구역관리, 총배치구조와 부지배치계획, 공공기초시설계획, 록지체계, 환경보호와 환경위생계획, 단계별건설계획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국제법적문건들이 마련됨으로써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두 나라 정부의 권리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였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할 지대의 법적지위와 법제도를 공동개발과 공동관리에 편리하게 만드는것이다.

우선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할 지대의 법적지위를 해당 나라의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법적지위를 가지는 지역으로, 특수경제지대로 만드는것이다.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무역, 생산, 봉사 같은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어떤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만드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매개 국가는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정책 및 전략에 기초하여 필요한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경제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가깝고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끌며 국제적인 투자, 무역 및 가공무역, 중계수송 등 경제적측면에서 유리한 지역,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지역적거점으로 될수 있는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도록 한다.

조중 두 나라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지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두 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였다.

라선지구는 이미 1991년 12월에 내각(당시의 정무원)의 결정으로 특수경제지대로 선포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에는 라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한다는것, 지대안에서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창설을 허용한다는것,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것,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것, 지대안에서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혜조치들을 취한다는것 등이 속한다.

황금평, 위화도지구는 조중 두 나라 정부가 이 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2011년 6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로 불리우면서 특수경제지대로 선포되였다. 정령에는 세가지 내용이 포함되여있는데 첫째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내온다는것이며 둘째는 경제지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 행사된다는것이며 셋째는 경제지대개발을 황금평지구부터 먼저 한다는것이다.

라선지구와 황금평, 위화도지구는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지대, 특수경제지대로 될수 있는 경제지리적조건들을 갖추고있다.

라선지구의 자연지리적우점으로 하여 총계획요강 제2장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린접국들인 중국, 로씨야와 륙로와 해상으로 모두 련결된 지대적인 특성을 잘 발휘하며 기초시설, 공업지구,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률농업의 6대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대를 점차 조선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물류중심기지, 지역적인 관광중심기지로 건설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3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조선

국내외 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두만강류역에 위치한 지리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국제자본, 기술장비와 관리경험을 끌어들이고 원유화학, 야금, 건재 등을 기본으로 하는 원자재공업, 조선업, 배수리, 자동차 등을 기본으로 하는 장비공업, 콤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제품 등 전자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 농수산물가공 및 일용소비품, 피복을 기본으로 하는 경공업,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 등을 기본으로 하는 봉사업, 농업의 새 품종, 새 기술, 농업생산체계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고효률농업 등 6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총면적은 746km^{2}로서 세계적으로 대단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특수경제지대들중의 하나이다. 세계에 있는 특수경제지대들에 비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을 특별히 크게 설정한것은 이 지대를 린접나라들과 평토적으로 련결된 수송 및 교통거점으로, 수출가공 및 관광봉사기지로 발전시키려는 지대개발의 목적과 관련된다.

황금평, 위화도지구의 자연지리적우점으로 하여 총계획요강 제2장에서는 황금평경제지대에서는 조선의 신의주, 중국의 단동과 린접하여있는 지리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6장에서는 조중경제무역협조중심지대에 위치한 지리적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쏘프트웨어주문봉사를 기초로 하는 정보산업, 조선민족문화창작과 공연, 관광 등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문화산업, 이름난 복장, 복장장식품생산 등 가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공업, 우량종자육종, 물절약농업, 온실재배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시설농업 등 4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있다.

라선지구와 황금평, 위화도지구가 특수경제지대로 선포됨으로써 조중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중요한 법률적환경이 보장되게 되였다.

또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할 지대의 법제도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편리하게 만드는것이다.

그것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사업이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의 기업, 기타 조직, 개인의 경제지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당 지대에서 그 지대법의 규제밑에 진행되기때문이다.

조선의 특수경제지대가 특별히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자, 무역, 생산,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므로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경제지대법제도가 따로 수립되여있다.

이러한 법은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편리하게, 정부간 합의에 부합되게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여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보충협정에서는 협정과 총계획요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앞으로 쌍방사이에 체결되는 협정, 합의서, 량해문이 경제지대법규제정의 주요근거로 된다고 규정하고 지대법에 포함시킬 주요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대법에는 특혜정책을 실시하는 경제지대의 지위 확정,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의 기업, 기타 조직, 개인의 경제지대에 대한 투자장려,

투자가의 기업, 지사, 사무소설치에서의 특혜보장, 투자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의 보호, 개인의 신변안전과 인신권리보장, 비법적인 구속이나 체포의 금지, 지적소유권보호, 경제지대의 개발방식, 경제지대관리위원회의 권능에 따르는 법규제정권의 부여,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금지, 경제지대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과 권능에 따르는 경제지대에서의 독자적인 재정체계수립, 경제지대내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경영관리, 경제지대에서 기업의 독자적인 로력채용, 기업의 경제지대안에서, 경제지대안과 경제지대밖사이의 자유로운 무역 및 거래활동 허용, 경제지대안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의 적용, 기업의 납세의무,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과 기업리윤, 재산의 반출, 경제지대에서 은행, 보험, 광고, 관광, 회계, 계량, 자문, 법률, 부동산, 교통운수, 물류 등 봉사업의 지지 및 관리, 경제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우편, 전화, 인터네트 등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조건보장과 위성텔레비존시청의 편리제공, 인원, 물자, 운수수단출입의 편리보장과 수속절차의 간소화, 경제지대에서 투자형식, 수출입, 토지리용, 로력채용, 관세, 세금 등에서의 장려조치와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경제지대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연부원개발의 허용, 경제지대에서 다양한 무역형식의 장려, 무역장벽의 감소, 경제지대내의 거주자, 체류자에게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에서의 각종 편리제공,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경제지대안의 기업이나 기타 조직, 개인과 관련된 경제분쟁의 관리위원회에 의한 조정, 신소 및 중재,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통한 해결가능 등의 내용들이 규정되여야 한다.

보충협정에서는 조선측이 보충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안으로 중국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지대법을 채택공포하며 그에 대한 임의의 수정보충도 협정의 근본목적에 맞게 협의하여 하기로 하였다.

협정 및 보충협정에 부합되게 1993년 1월에 채택되여 그후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2011년 12월에 수정보충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 채택되였다. 이와 함께 해당한 규정, 세칙들이 제정되였다.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법저촉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저촉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와 련관되여있는 둘이상 나라의 법이 서로 대립되여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례를 들어 대외무역을 비롯한 대외적인 거래관계에는 판매자국가의 법과 구매자국가의 법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내용에서의 차이로 하여 이 법들은 서로 대립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법저촉이다.

일정한 대외민상사관계와 관련하여 법저촉이 있게 되는 경우 해당 민상사관계의 법적성립과 효력을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결정하겠는가, 당사자들사이의 분쟁해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법률적문제 즉 법저촉문제가 제기된다.

법저촉문제를 해결하자면 그것을 발생시킨 대외민사관계와 련관된 여러 나라의 법들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법저촉현상이 발생되면 어느 법을 적용하겠는가 하는 법저촉문제가 제기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적용하여야 할 하나의 법 즉 준거법을 선정하여 법저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준거법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두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법저촉은 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서 지대법과 지대밖의 법, 조중 정부가 합의한 협정을 비롯한 국제법적문건이 내용적으로 대립되는 현상이다.

두 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해당 지대의 지대법과 그 지대법 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들이 적용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각각 제10조에서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 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두 특수경제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의 구성부분으로서 전국에 적용되는 법의 규제도 받게 되며 두 나라 정부가 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한것만큼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국제법적문건의 규제도 받게 된다.

물론 특수경제지대에는 특별히 정한 법이 적용되고 그 법은 두 나라 정부가 체결한 국제법적문건을 주요근거로 하여 그에 부합되게 제정되지만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를 규제하는 지대법과 지대밖의 법, 국제법적문건들의 내용이 서로 차이나는 경우에 부딪치거나 법규정에 대한 리해와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법저촉현상이 생길수 있다.

두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저촉현상은 지대법과 지대밖의 법, 국제법적문건가운데서 어느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는가 하는 법저촉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두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저촉문제를 해결하자면 지대법과 지대밖의 법, 국제법적문건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법을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조중 두 나라 정부는 국제법적문건과 지대법들에서 법저촉문제해결에 관한 국제사법적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두 지대에 대한 정부간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보장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보충협정 제3조에서는 경제지대법규와 조중쌍방이 체결한 경제지대와 관련된 협정, 보충협정, 량해문, 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였을 경우 쌍방이 체결한 경제지대와 관련된 협정, 보충협정, 량해문, 합의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임의의 기타 국내법규가 경제지대의 법규와 불일치되는 경우 경제지대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각각 제10조에서 경제지대의 법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경제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지대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는 두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적인 조항을 규정하였을뿐아니라 법저촉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협정 제7조에서 경제지대법의 공포후 조선측은 경제지대와 련관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 및 수정보충하는 경우 협정의 근본목적과 경제지대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며 그에 대하여 중국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는것을 규정하였으며 중국측은 해외투자 특히 경제지대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자기측의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조선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서도 규정하였다.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두 나라 정부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확인되고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할 지대의 법적지위와 법제도가 마련되였으며 법저촉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적인 조항이 규정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조중 정부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은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3. 결 론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제1장에서는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깊은 전통적인 친선을 가지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쌍방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협조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있다.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친선을 도모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정신에 따라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호혜공영의 경제무역협조를 확대심화시키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적인 념원과 장기적인 리익에도 부합되는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수경제지대개발에서 외국의 민간투자가들을 상대할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를 직접 대상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중국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중국 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의 당사자로 나서게 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민간투자가들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두 나라 정부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투자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 새로 제정공포하거나 전면 수정보충하고 해당한 국제법적합의가 이룩됨으로써 조중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협력과 교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조중친선관계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2018년에 진행하신 세차례에 걸치는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힘있게 추동하고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우의의 정을 안으시고 2019년의 첫 정치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중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특수한 정세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중국측과 일치단결해나갈것이며 두 당,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조중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승화발전시키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중국당과 정부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중시하고있으며 이를 더욱 훌륭하게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지금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정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고 정부간 합의들을 리행하고있다. 두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지지와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공동개발, 공동관리, 특수경제지대

(필자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사원생(중국류학생)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법률학 제65권 제2호

부르죠아문화범죄학의 반동성

김 철 희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일군들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적대적사상들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자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투해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500페지)

범죄의 원인을 심히 외곡하여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제도를 적극 비호하고 합리화하고있는 부르죠아범죄학의 반동성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까밝히는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폭로비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범죄학은 범죄현상과 범죄의 원인 및 예방 등 범죄와 직접적으로 련관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자본주의법률 및 사회학분야의 학문이다. 부르죠아범죄학은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뿐아니라 범죄로 얼룩진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를 적극 비호하고 옹호하는 반동적인 학설로 복무하고있다.

부르죠아범죄학이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범죄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문제이며 여기서도 범죄의 원인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범죄의 원인에 관한 문제가 자본주의사회의 고질적질병인 범죄를 《연구》하는 부르죠아범죄학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것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범죄와 관련한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이 세워지기때문이다.

온갖 범죄가 범람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중요한 법률적도구로 적극 리용하여온 반동적통치계급은 자본주의의 초시기부터 저들의 이러한 통치방식의 실현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할수 있는 범죄학의 《연구》를 적극 조장시켜왔다.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학은 통치배들의 지배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하는 정책적인 학문으로 표방되여 통치배들의 정책실현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리론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류포되여 범죄적인 사회제도를 비호하고 합리화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는 리론적도구로서의 문화범죄학 역시 인류가 창조한 고상한 정신세계의 반영인 문화를 사회적현상으로서의 범죄와 인위적으로 련관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제도가 산생시킨 온갖 범죄를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소수 민족이나 종족, 사회적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의한것으로 오도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이다.

론문에서는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제도의 필연적산물인 범죄와 그 원인을 반동적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외곡하여 오랜 력사적발전과정에 창조된 물질적 및 정신적부의

총체인 문화에서 찾고있는 현대부르죠아범죄학의 하나인 문화범죄학의 발생 및 변천의 력사적과정과 주요내용, 반동성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2.1. 문화범죄학의 발생과 그 변천과정

문화범죄학은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에 뿌리를 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와 그 원인을 사회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종족, 사회적집단들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에 밀어붙이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범죄자로, 그들의 문화를 온갖 범죄의 원인으로 매도하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이다.

부르죠아문화학의 각도에서 범죄현상을 《연구》한다고 하는 문화범죄학은 20세기에 들어와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혼란된 자본주의의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위기를 반영하여 나온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현시기 범죄문제를 인식하는데서 그 무슨 《심원한 리론적의의》와 《실천적의의》를 떠들고있는 부르죠아범죄학으로서의 문화범죄학의 발생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자면 부르죠아범죄학이 발생하고 변천되여온 과정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문화범죄학이 초기부르죠아범죄학의 주요학파의 하나였던 실증주의범죄학으로부터 갈라져나온 범죄사회학에 그 뿌리를 두고있기때문이다.

부르죠아범죄학은 18세기 중엽 서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이 시기 자본주의의 제도적산물로서 사회의 뿌리깊은 악성종양과도 같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동적통치계급과 그 사환군들인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범죄를 《사회와 함께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사회의 구성》으로 규정하는것과 함께 이것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범죄의 원인에 대한 탐구와 《범죄예방》을 위한 방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범죄학을 고안해내게 되였으며 그와 관련한 잡다한 리론들을 대대적으로 조작하고 류포시켰다.

원래 범죄학의 기본개념인 범죄에 대한 견해는 고대시기부터 론의되여왔으나 봉건사회말기까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것이였으며 종교적인 견해들이였다. 더우기 중세 봉건통치배들은 종교의 정신적기둥을 리용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인간원시범죄론(원죄론)》에 기초한 범죄관념을 고안해내였다. 봉건시기 주장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간의 원죄론》적견해는 오랜 기간 사회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더우기 사람들이 범죄를 인식하는데서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17세기말－18세기초 유럽에서는 봉건의 지배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세력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당시 《리성》의 기치를 들었던 부르죠아계몽주의자들은 투쟁의 창끝을 봉건의 모든것을 공격하는데로 나아갔다.

특히 이 시기 형사사법령역에서 《자유》, 《평등》, 《박애》 등의 구호를 들고 봉건의 잔인한 죄형전단주의를 반대한 부르죠아계몽운동은 신흥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반영한 《죄형법정주의》와 《죄형등가주의》, 《형벌의 인도화》 등 형법적견해에서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 부르죠아형법사조로서 형사고전학파가 발생하고 범죄를 계통적으로《연구》하는 부르죠아학문으로서 범죄학발생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봉건의 태내에서 자라난 부르죠아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한 첫 부르죠아범죄학은 고전주의범죄학이였다. 당시 고전주의범죄학의 기초를 축성한 학자들로는 이딸리아의 케자르 베까리아(Cesare Beccaria)와 토마소 나딸레(Tomaso Natale), 영국의 제러미 벤텀(Jeremy Bentham) 등이다.

부르죠아계몽주의자들의 형사법리론과 고대시기의 응보주의에 기초하여 세워진 고전주의범죄학은 주로《천부인권》과《사회계약》,《개성해방》등의 학설과《자유》,《평등》,《박애》의 구호를 내걸고 봉건국가의 전단주의를 비판공격하였으며 이 과정에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죄의 예방, 범죄자대우 및 형벌에 대한《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전주의범죄학은 범죄와 관련하여 법이 인간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본래의 원리 즉 신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졌기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된다고 보는 자연법적견해에 기초하여 이것을 구현한 부르죠아국가의《법치》와《민주》,《자유》,《평등》의 관념을 주장하면서 전개되였으며 범죄원인에 대하여서는 그 무슨 추상적인 인간의《자유의지》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고전주의범죄학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허황한 공리공담만을 일삼았으며 추상적인 리론적연구에만 치중하였다.

때문에 고전주의범죄학에서 주장된 범죄에 대한 견해들은 봉건사회의 형사법률제도를 비판하는데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지만 자본주의발전과 함께 사회에 범람하는 범죄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였다.

19세기 후반기는 자본가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들을 합병한 결과 독점이 형성되여 자유경쟁의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에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독점자본주의에로의 전화과정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구가 대량적으로 도시에로 흘러들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였으며 이로 하여 실업과 빈곤, 매음, 폭주 등 수많은 사회적문제들과 함께 온갖 범죄현상들이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불안을 더욱 조성하였다. 이 시기 자본주의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들과 루범, 상습범, 그리고 소년범죄를 비롯한 청소년범죄들은 종전의 낡고 뒤떨어진 고전주의범죄학의 리론으로서는 설명할수도 해결할수도 없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였다.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의 심각한 범죄현실은 부르죠아계급이 더는 고전주의범죄학의 리론으로써는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정당화하고 옹호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범죄현실을 반영하여 당시 실증주의적인 연구방법으로 범죄문제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증주의범죄학이 출현하였다.

실증주의범죄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의 결과로 산생된 온갖 범죄적현상에 대한 책임을 무마시키고 정당화하며 회피하기 위한 반동적인 학설이고 리론이였다. 실증주의범죄학에 의하여 범죄적행위를 위주로 하여 범죄현상을《연구》하던 고전주의범죄학의 연구방향이 범죄자에게로 전환되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고전주의범죄학에서 범죄의 원인을 사람의《자유의지》에 기초한 행위에서 찾던것을 실증주의범죄학에서는 범죄행위의 수행자인 범죄자의 육체적구조와 사회적구조에서 찾으려고 하였던것이다.

따라서 실증주의범죄학은 인류학파와 사회학파로 갈라져 발전하였다.

범죄와 그 원인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이딸리아의 해부의사이고 범죄학자이며 범죄인류학파창시자의 한 사람인 롬브로조는 당시 다윈의 진화론적사고와 꽁트의 실증주의적연구방법을 받아들이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림상적관찰과 해부분석 등 인류학과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자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범죄행위의 근원을 추적하여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는 분석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범죄인류학이라는 부르죠아범죄학의 하나의 갈래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의 범죄학연구가 자연과학적인 인류학적방법과 함께 병리학과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의 연구성과들에 기초한 생물학적방법으로 진행된것으로 하여 범죄인류학을 가리켜 범죄생물학이라고도 불렀다.

범죄인류학과 거의 동시에 출현한 범죄사회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늘어나는 범죄의 원인을 주로 사회적환경과 조건에서 찾고있는 실증주의범죄학의 한 갈래로서 범죄인류학에 대한 비판에 토대하여 형성된 부르죠아범죄학이였다.

당시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의 발전은 자본주의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과학적인 실증주의적연구방법은 보편적인 중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선진적인 기술을 리용하여 당시 악질적인 3대전염병으로 되여있던 천연두와 디프테리아, 콜레라의 전파를 막으려고 하였고 사회과학분야 특히 형사학분야에서는 영국의 철학자였던 스펜써(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꽁트의 《실증주의철학》에 기초하여 당시 사회의 3대고질적질병이라고 하였던 정신병과 자살 그리고 범죄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범죄사회학의 제창자들은 고전주의범죄학에 대하여 그것이 완전한 론리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단순한 선전이나 고무적인 구호에 불과할뿐 과학으로는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범죄인류학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비록 범죄자를 중시하였다고 하지만 범죄에 미치는 사회의 중요한 영향을 홀시한것으로 하여 찬성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사회학을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들은 도이췰란드의 범죄학자이며 형사법학자인 프란쯔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와 이딸리아의 범죄학자 엔리코 페리(Enrico Ferri), 프랑스의 리옹학파였다.

범죄사회학이 고전주의범죄학의 견해와 범죄인류학의 주장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완전히 부정한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범죄에 대한 고전주의범죄학의 리론에 대해서는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리론이라는데로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죄인류학과 관련하여서는 사람의 선천적인 특성을 범죄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부정하였고 범죄의 일정한 원인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하는 관점에 서있었다. 다시말하여 범죄사회학의 리론들은 사회의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인 범죄자의 선천적특징과 사회적요인중에서 사회적요인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는 리론이였으며 반대로 범죄인류학은 전적으로 범죄자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주장하는 리론이였다.

범죄자의 육체적특징만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였던 범죄사회학의 리론들은 다같이 범죄의 사회적원인을 범죄의 원인으로 강조하였지만 그 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였다. 실례로 이딸리아의 범죄사회학자 페리는 범죄자의 육체적특징과 사회적원인, 자연적요인 등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범죄의 3원론》을 주장하였지만

도이췰란드의 리스트는 사회적요인과 범죄자특징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범죄의 2원론》을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프랑스 리옹학파의 라카싸녀는 범죄의 사회적원인으로서 사회적환경을 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내세웠다.

범죄사회학의 리론에서 내세우고있는 주장들이 그 어느것이나 다 범죄발생에 작용하는 사회적요인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마치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환경을《개선》하면 범죄를 조절하고 없앨수 있는듯이 사실을 외곡하여 사람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발생의 근원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음흉하고 교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반동적인 궤변들이였다.

근대시기에 형성된 실증주의범죄학은 범죄학령역에서 고전주의범죄학의 행위위주의 관점과 철저한 대립을 형성하였으며 이로 하여 이후 부르죠아범죄학의 변천은 주로 실증주의범죄학의 학파들인 범죄인류학파와 범죄사회학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였다.

유럽의 실증주의범죄학으로부터 파생되여나온 범죄사회학은 19세기말 자본의 급속한 팽창으로 하여 점차 비대해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적위기와 함께 빈부의 격차, 실업, 종족간분쟁, 민족모순 등 많은 사회적문제들을 산생시켰다. 특히 통제할수 없을 정도에 이른 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사회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르죠아통치배들은 이미 유럽에서 연구되고 있었던 사회학에 눈길을 돌려 그것으로 사회의 범죄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범죄학은 사회학의 영향밑에 이루어지고 사회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사회학의 원리와 개념들에 기초하여 형성되게 되였다.

현대에 와서 유럽의 도이췰란드, 오스트리아학파가 주장하고있는 범죄체질학과 범죄유전학, 범죄인격학, 범죄병리학, 범죄생물화학 등 신생물범죄학의 분야들은 바로 범죄인류학파의 리론의 연장이며 자본주의나라들의 범죄실태를 사회학적방법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사회해체론이나 문화전파론, 차이결합론, 차이동화론, 범죄지리학론, 복합요인론을 포함하고있는 문화전파의 리론들과 문화충돌론, 하급계층문화론, 사회비정상론, 범죄적하위문화론, 차이기회구조론 등을 포함하고있는 문화범죄학의 리론들은 실증주의범죄학에서 파생된 범죄사회학파의 영향밑에 이루어진 리론들이다.

오늘날 문화범죄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위기를 정당화할 목적에서 고안되고 통치배들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에 맞게 부단히 각색되며 보충되여 범죄문제를 인식하는데서 그 무슨《심원한 리론적의의》와《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는 리론으로 널리 부식되고있다.

2.2. 문화범죄학의 주요내용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 범람하는 온갖 범죄를 사회적집단의 문화에 몰아붙이고있는 문화충돌론이나 하층계급문화론, 범죄적하위문화론, 사회비정상론, 차이기회구조론 등 문화범죄학계렬의 범죄학리론들은 그것이 유치하고 편견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임에도 불구하고 반동적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고있는것으로 하여《실천적인 학문》으로 적극 주장되고있다.

사회의 문화를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보고있는 문화범죄학계렬의 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반동적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반동정책이 빚어낸 범죄를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이나 종족, 사회적집단의 문화 특히 근로인민의 문화에 의한것으로 합리화하고있으며 이것으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탄압을 정당화하고있다.

문화충돌론(Culture Conflict Theory)은 범죄가 문화의 산물이라는 전제밑에 사람이 범죄를 범하게 되는것이 사람들사이의 접촉과 교류가 날로 활발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다른 문화가 가치관념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이다.

문화충돌론은 반동적인 사회제도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에 근원을 두고 날이 갈수록 범람하여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고있는 여러 민족들과 종족집단들의 서로 다른 문화들의 충돌의 결과로 몰아붙이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지배계급의 온갖 파쑈적통치실현을 합리화하고있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오랜 력사발전과정에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부의 총체로서 여기에는 사회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등의 발전정도가 반영되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발전은 국가와 민족, 종족과 같은 일정한 집단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문화를 통하여 집단의 력사와 전통, 풍습과 생활감정 등과 그 발전정도를 알수 있다.

문화충돌론은 바로 나라와 민족, 종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된 문화의 차이점을 자본주의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를 낳는 근본원인으로 주장하는 극히 비과학적인 리론이며 사회를 범죄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실제적인 원인을 은페시켜보려는 반동적인 궤변이다.

서로 다른 문화들의 충돌과정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문화충돌론은 20세기에 들어와 인류에게 막대한 참화를 가져다준 두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 조성된 사회적혼란을 반영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진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의 하나이다.

원래 문화의 충돌이 범죄와 련관을 가진다는 견해는 일부 범죄학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것이 결코 아니였다. 사회의 범죄에 대한 실증주의적연구를 제창하였던 실증주의범죄학파의 학자들은 이미 범죄가 사람의 유전적영향과 함께 사회적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 사회적요인으로서 문화수준의 정도에 대하여 일정하게 설명하였다. 실례로 도이췰란드의 형법학자이며 실증주의범죄학파의 주도적인물이였던 리스트는 범죄의 원인을 행위자의 천성적인 육체적구조에서만 정당화하였던 이딸리아의 범죄학자인 롬브로조의 범죄원인론을 부정하면서 사람의 생물학적요소가 사람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회적요인이 범죄형성에 결정적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요인으로서 대중의 빈곤은 실업과 렬악한 거주조건, 저임금, 생활필수품가격상승, 폭주 등 문화수준과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사회의 일반문화와의 충돌을 가져오며 결국 범죄로 나가게 된다는 궤변을 늘여놓았다.

이러한 실증주의범죄학으로서의 범죄사회학파의 견해에 기초하여 타프트(D. R. Taft)를 비롯한 범죄학자들은 사회구조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실증주의범죄학의 반동적견해를 받아들여 범죄문화론을 내놓고 뒤이어 처음으로 문화충돌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문화가 민족이나 일정한 집단의 풍속이나 가족관계, 신앙, 도덕, 언어, 심리적특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문화학의 원리를 리용하여 범죄가 사회의 문화구조 다시말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민들로 구성된 사회의 문화구조에 있다는것을 주장하였다.

문화충돌론을 지배계급의 구미에 맞게 더욱 반동적으로 완성시킨자는 범죄학자 토스턴 셀린(Thorsten Sellin)이였다. 그는 범죄에 대한 《연구》를 이민범죄로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기간과 그후 오랜 기간의 문화충돌론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자본주의제도가 산생한 범죄를 이민사회의 문화구조로서 정당화하였다.

셀린은 문화충돌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자면 특수한 사회적변화의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안정》된 사회가 격렬한 변화의 시기에 들어갈 때 또는 사회의 문화구조가 첨예한 충돌을 반영하면서도 그것과 조화될수 없는 외적표현으로 될 때에야 문화충돌이 일정한 정도에서 범죄의 중요원인으로 되게 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변화현상으로서 전쟁과 대규모이민, 사회변혁, 급진적정치운동 등을 제기하였다.

문화충돌론에 대한 셀린의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사회의 범죄원인에 대한 완전한 외곡이였으며 특히는 통치배들의 사회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합리화해주는 반동적인 견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범죄의 중요원인으로 본 문화의 충돌이 특수한 사회적변화를 동반할 때 작용한다고 함으로써 통치배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운동이나 생존을 위한 투쟁을 탄압할수 있는 리론적근거를 지배계급에게 주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반동적통치계급의 적극적대변자였던 셀린은 이민범죄문제를 론하면서 주장한 문화충돌의 범죄원인론을 지배계급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요구에 맞게 이민범죄의 령역을 훨씬 벗어나 사회전체의 문화구조측면에서 더욱 반동화하였다.

현시기 반동적인 부르죠아범죄학자들은 문화충돌론이 범죄가 가지는 계급적성격을 교묘하게 가리우고 범죄를 정치적지배실현의 법률적수단으로 리용하려는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적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있는데로부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문화충돌론이 날로 엄중해지는 범죄문제를 인식하는데 그 무슨 《리론적 및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리론이라고 줴치고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충돌론과 같은 갖가지 범죄학리론들을 적극 고안하고 류포시키도록 하고있다.

오늘 부르죠아범죄학자들이 문화충돌론과 같은 사기적인 궤변으로 사회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이 범죄의 근본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인 견해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의 총체인 문화를 범죄와 인위적으로 련관시켜 자본주의사회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허황한 반동리론이라는것을 결코 감출수 없다.

하층계급문화론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사회의 기초로 뿌리깊이 부식되여있는 자본주의제도자체의 필연적산물인 범죄를 로동계급을 비롯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근로하는 집단에 몰아붙이는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하층계급문화론은 자본주의사회를 상, 중, 하의 3대계층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사회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문화가 필연적으로 사회의 다른 각종 문화들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범죄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문화충돌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계급의 문화가 중, 상층계급의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 사회의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궤변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발생원인을 심히 외곡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범죄학리론이다.

하층계급문화론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 조성된 경제적위기로 하여 앙양되고있었던 로동운동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리론적으로 변호하고 정당화할 목적으로 1950년대 후반기 고안되여 사회에 대한 반인민적정책실현을 적극 안받침하여온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하층계급문화론의 적극적제창자였던 범죄학자 왈터 밀러(Walter Miller)는《특정한 문화권안에서 혹은 한개 국가 또는 사회에는 시종일관 상, 중, 하의 3대계층이 존재》하며《일정한 력사적조건밑에서 이러한 사회의 3대계층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여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하층계급이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갈라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계급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구별되는 계층으로서의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고있다. 즉 하층계급문화론의 제창자들은 계급이라는 의미를 사회의 전체 성원을 포함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류개념으로 보았으며 계층을 그 집단안에 존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종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왈터 밀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3대계층은 구조에서 변함이 없지만 구성성원은 부단히 교체된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사회의 격렬한 경쟁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경쟁으로 하여 범죄가 발생한다는 궤변을 늘여놓았다. 그는《사회의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데 여기서 승리는 일정한 권력이나 재산의 소유를 의미하며 이긴자는 중층이나 상층으로 올라가 통치계급의 구성부분으로 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방면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마치도 자본주의사회제도가 그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평등》하게 보장해주는《민주주의적인 사회》라도 되는듯이 위장하고있다. 이와 함께《실패는 권력이나 재산의 상실을 의미하며 실패한자는 통치를 받는 하층계급으로 되여 그의 지위는 매우 낮게》된다고 하면서 바로 실패한자들이 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과정에 범죄적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바로《평등하고 자유로운 치렬한 경쟁》이 하층계급을 범죄에로 떠민듯이 력설하고있다.

하층계급문화론의 제창자들은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벌어지고있는 통치배들의 파쑈적탄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활하게도 당시 범죄학계에서 류행되고있던 문화충돌의 그 무슨《원리》를 악용하여 범죄를 지배계급의 반동정책에서가 아니라 그 무슨《사회를 구성하는 3대계층》의 맨 아래에 있는 하층계급의 문화에서 그 원인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남이야 어떻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시시각각으로 조장시키는 반동적인 사회이며 돈이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황금만능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타고앉아 먹고 억누르는 약육강식의 법칙과 퇴페적인 생활양식을 비롯한 온갖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반인민적사회라는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계급적대립이 사회의 본질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제도와 그것을 유지하려는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이 제도자체를 범죄의 왕국, 범죄의 소굴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충실한 사환군들인 부르죠아어용범죄학자들은 이러한 하층계급문화론과 같은 반동적리론들로써 사회적부의 창조자이고 생산자인 근로대중을《범죄집단》으로, 그들의

문화를《범죄문화》로 매도하고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반동적리론들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권층의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사회의 온갖 범죄들이 외곡되고 부정되고있다.

현시기 부르죠아통치배들과 그 사환군들인 어용범죄학자들이 하층계급문화론과 같은 비과학적인 궤변들로 자본주의사회제도자체가 산생시킨 온갖 범죄에 대하여 철면피하게 외곡하여도 그것이 안고있는 반동적성격을 결코 감출수 없다.

범죄적하위문화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부르죠아생활양식의 부식이 낳은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문화 아닌《문화》로서 합리화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범죄를 심히 외곡하고있는 문화범죄학파의 리론이다.

범죄적하위문화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경제적위기와 그로 하여 강화되는 로동운동을 탄압하고 그 무슨《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미명밑에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고있던 1950년대 말에 출현한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범죄적하위문화론은 청소년들을 도외시하는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정책이 빚어낸 사회의 골치거리, 우환거리인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그 무슨《문화충돌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몰아붙이는 지배계급의 반동적정책의 대변론이다.

반동적통치계급의 정책적대변론인 범죄적하위문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한자는 사회학자이며 청소년범죄전문가였던 알버트 코헨(Albert Cohen)이였다. 그는 이 시기 청소년범죄를 취급하면서 청소년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심리현상과 사고방식, 행위형태에 기초하여 이것을《범죄적하위문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리론화하여 범죄적하위문화론이라는것을 제창하였다.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 주장하고있는《하위문화(Subculture)》란 한마디로 해당 사회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문화 즉 지배계급의 문화에 종속되여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하위문화》는 사회에서 기본을 이루면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통치계급의 문화와 함께 그 변두리나 하층에서 존재하고있는 문화를 말한다. 이로부터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는《하위문화》가 사회의 지배적지위에 있는《주도문화》와 동떨어져 그자체만으로는 있을수 없다고 본다.

이에 기초하여 코헨은《범죄적하위문화》란 범죄와의 밀접한 련관을 기본특징으로 하고있는 사회의 2차적인 문화라고 하였다. 즉《범죄적하위문화》는 범죄집단이나 소년범죄집단의 내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특정한 신념》과 생활방식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사유방식과 행위양식이며 이것은 범죄를 뗄수 없는 중요요소로 하는 일종의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코헨은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 사회의 청소년범죄자들의 대다수가 남성로동계급의 성원들이며 때문에 청소년범죄는 사회의 기본구조와 련관되여있을뿐아니라 범죄자가 속한 하층계급의 문화구조와도 밀접한 련관을 가지게 된다고 력설하였다.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 범죄의 원인을 하층계급과 련관시키고있다고 하여 그것이 하층계급의 문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하층계급문화론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론의하는 각도에서 차이가 있는것이다. 물론 하층계급문화론이나 범죄적하위문화론은 다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하는 계급의 문화를 범죄의 원인이라고 부당한 궤변을 주장하는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라는데서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 그 차이는 하층계급문화론이 하층계급 그자체의 문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매도하는 리론이라면 범죄적

하위문화론은 사회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하층계급의 청소년범죄를 론하고있다는것이다.

범죄적하위문화론이 사회의 구조와 련관시켜 범죄문제를 론하다고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모순에서 찾는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 말하는 《사회구조》란 온갖 부정적현상을 낳는 자본주의사회의 적대적인 계급적대립구조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의 상, 중, 하의 계층으로 구성되였다고 보는 그러한 《사회구조》를 의미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범죄학리론들이 범죄의 원인을 론하는데서 공통적으로 취하고있는 립장은 사회를 지배하는 반동적인 사상적기초와 사회경제적기초에서 범죄의 근원을 찾는것을 로골적으로 회피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이라는것은 사실상 실제적인 범죄의 근원이 아니라 범죄의 발생과정을 의미하며 통치배들은 바로 이러한 범죄발생과정에 대한 범죄학리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의 범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것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해나가려고 하는것이다.

범죄적하위문화론 역시 이러한 립장에서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론하고있으며 《범죄적하위문화》에 대하여 온갖 궤변을 늘여놓고있는것이다. 더우기 범죄적하위문화론이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으로서 범죄의 원인을 론하고있지만 자본주의의 사회문화구조의 계급적성격에 대해서는 회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통치계급의 계급적립장을 반영하고있는 리론이라는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문화 아닌 《문화》에 있는것이 아니라 계급적차별을 절대화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제도와 그로 하여 가해지는 온갖 천대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낳는 계급적대립에 있으며 이것을 정당화하고 부식시키는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퇴페적인 생활양식에 있다.

이것을 외면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청소년범죄의 그 무슨 원인을 찾고있는 범죄적하위문화론은 본질에 있어서 통치배들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청소년범죄에 마치도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내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철저히 청소년범죄에 대한 그 무슨 《연구》로서 지배계급의 정치적지배를 합리화하자는데 그 실제적목적이 있다.

차이기회구조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은 사람이 범죄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는 사회생활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기회들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문화범죄학파의 리론이다.

범죄의 원인을 주로 《문화의 차이》에서 주장하고있는 문화범죄학의 다른 리론들과는 달리 차이기회구조론은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기회》라는 수단을 리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근로하는 계급인 하층계급에게 범죄의 원인을 밀어붙이고있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차이기회구조론은 1960년대 중엽 자본주의의 착취와 략탈로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생활이 더욱 반동화되는데 따라 범죄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진 자본주의사회의 범죄적현실을 통치배들의 지배적요구에 맞게 교묘하게 외곡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반인민적인 사회제도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너울로 미화분식하려는 목적밑에 고안되여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진 범죄학리론이다.

부르죠아범죄학에서 《실천적리론》의 하나로 적극 떠들어대고있는 차이기회구조론의 반동적특징은 그것이 다른 범죄학리론들처럼 단순히 범죄의 원인을 외곡하거나 회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당화하며 외곡된 설명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범죄현실과 사회제도를

적극 미화분식한다는데 있다.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우선 사회에 범람하고있는 범죄가 자본주의제도자체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것을 외면하고 그것이 마치도 사회의 개별적사람들이 생활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그 무슨《기회구조》의 서로 다른 차이에 따르는 우연적인 현상인듯이 심히 외곡하고있다.

차이기회구조론을 고안한 반동적인 사회학자들인 클라우워드(Richard A. Cloward)와 오린(Lloyd E. Ohlin)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의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기회들에 맞다들거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들에는 성공의 기회도 있고 실패를 가져오는 기회도 있을수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합법적수단을 리용하는 기회와 함께 비법적인 수단을 리용하게 하는 기회도 있게 된다는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과정에서 부닥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기회들이 서로 결합되여《기회구조》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기회구조》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되는 그 무슨《차이기회구조》라는것을 형성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내세우고 달성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든 비법적으로 감행하든 매 사람이 부닥치게 되는《차이기회구조》와 사회적지위의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부터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회적지위에 속하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특유의《차이기회구조》로 하여 리용하는 수단들도 자연히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론리에 따라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게 되는것은 그들이《범죄문화》와 접촉하게 되는《기회》의 정도에 달려있으며 반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것은《범죄문화》와의 접촉에 대한《기회구조》의《방해》때문이라는 궤변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기회라는것은《알맞는 겨를이나 짬》을 의미하는 생활상의 일반용어로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기에 알맞는 때나 경우를 의미한다.

차이기회구조론의 론리대로라면 사람의 모든 활동방향과 결과는 그가 생활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기회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람의 운명문제도 그가 어떤 기회들과 맞다들게 되는가 하는 운수놀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떨어진다. 결국 사람이 범죄자로 되는가 안되는가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기회》라는 객관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진다.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또한 극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자본주의사회가 마치도 그 누구에게나 다《발전의 기회》라도 가져다주는 사회인듯이 적극 미화분식하고있다.

범죄의 원인에 관한 차이기회구조론의 반동적특징의 다른 하나는《기회구조》를 통하여 온갖 범죄가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를 그 무슨《자유세계》로 분칠하고있는것이다.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비법적수단리용의 견지에서 주장하였던 다른 범죄학리론들과는 달리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범죄자들이 비법적인《통로》만을 범죄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이 결코 아니며《합법적통로》역시 범죄의 수단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회제도자체가 사람들에게《모든 가능성을 위한 기회가 다 보장되는 자유세계》이기때문이라는 력설을 늘어놓고있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통로》라는것은 범죄실행의 방도와 방법, 수단, 기회 등의 호상결합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합법적인것과 비법적인것의 두가지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통로》는 범죄감행의 한순간에 또는 전기간에 걸쳐 달라질수 있고 지어 범죄의 방향까지도 변경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권력이 독점재벌들과 그 하수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정치의 대상이 되여 무권리속에서 헤메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정치생활이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일관되여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있으며 모든 경제생활이 독점재벌을 비롯한 특권층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키는데로 일관되여 근로인민대중을 극도의 빈궁과 실업에로 몰아넣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문화생활이 돈벌이공간으로, 사기와 협잡판으로 변모되여 근로인민대중은 문화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사회가 부르죠아생활양식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사회로 전락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태를 반동적통치배들의 정책대변자들인 어용범죄학자들이 가지각색의 리론들로서 교활하고 뻔뻔스럽게 미화분식하고있는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리고 모든 부문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범죄는 바로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3. 문화범죄학의 반동성

자본주의사회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문화범죄학의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하는것은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의 비과학성을 까밝히고 범죄로 가득찬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리론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는것은 사상리론분야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한 형태입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62페지)

문화범죄학의 반동적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본주의의 반동적사회제도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범죄를 합리화하는 반동리론이라는데 있다.

20세기초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주장한 문화전파론에 그 뿌리를 두고 문화충돌론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범죄학의 리론들은 전쟁이 종결되고 자본주의경제가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 그대로 존재하고있는 빈부의 극심한 차이와 같은 사회적모순들과 범죄률의 급속한 증가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을 합리화할수 있는 근거를 이민들로 구성된 사회의 주민구성과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 류포되여있는 문화범죄학의 모든 리론들은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가장 철저하게 대변하는 반동적인 범죄학문, 지배층의 정책학문으로 되여 날로 늘어만가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구미에 맞게 온갖 궤변과 감언리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있다.

2.3.1. 인류가 창조한 문화를 범죄의 원인이라고 줴치는 파렴치한 궤변론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류포되여 사회에 대한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실현의 대변론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놀고있는 문화범죄학의 반동성은 그것이 력사발전과정에 인류가 창조한 문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오도하여 황당하게 주장하는 파렴치한 궤변론이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적징표로도 되는 사회의 첨예한 계급적대립과 구조적모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극구 미화분식

하는것은 부르죠아리론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이다.

문화범죄학 역시 반동적지배계급의 사회에 대한 반동사상문화주입정책으로 하여 사회에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뿌리깊이 만연되고 사람을 인간이하의 추물로 전락시키는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적극 부식시켜 사회에 온갖 범죄가 판을 치게 한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으며 오히려 민족과 종족 등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는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악용하여 력사의 주체이고 물질적부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의 고상하고 건전한 문화에 대하여 입을 모아 《범죄문화》로, 《범죄의 원인》으로 모독하고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산물로서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높이를 나타내며 력사적으로 변화발전하여왔다. 인류력사와 더불어 발생한 문화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력사와 함께 발전하여왔다.

계급사회에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는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사회적재부로서 그것이 사람들의 물질적수요가 아니라 주로 정신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신적재부인것으로 하여 지배계급의 정치적지배실현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되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적인 자본가계급은 사람들에게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혁명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페적인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끊임없이 류포시킴으로써 사람을 동물적존재로 부패타락시킨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과 그 하수인들은 모든 사회현상들을 저들의 계급적리익에 맞게 외곡하여 여러가지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상리론들을 수없이 꾸며내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람의 본성이 동물적본성으로, 사회의 법칙이 생물세계의 법칙으로 외곡되여 사람이 개인의 물질적욕망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존재로 둔갑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내세워지게 되였다.

문화범죄학은 바로 통치배들의 이러한 반동정책과 그로 하여 산생된 범죄를 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합리화하고 범죄를 통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저들의 정책적대변자들인 범죄학자들을 내세워 고안해낸 반동적인 부르죠아범죄학의 하나이다.

반동적지배계급의 충실한 사환군들인 어용범죄학자들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의 문화를 《범죄문화》로 모독하는 문화충돌론과 하층계급문화론, 사회비정상론, 범죄적하위문화론, 차이기회구조론 등 각양각색의 범죄학리론들이 수없이 고안되여 통치배들의 정치적지배실현을 리론적으로 적극 담보하여주고있다.

문화범죄학에서는 우선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저촉에 범죄성을 부여함으로써 문화가 범죄의 원인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문화충돌론의 첫 제창자였던 타프트는《이민사회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문화는 필연적으로 기타의 각종 문화와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며 필연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범죄행위가 장기간 존재할수 있는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사이의 접촉이나 개인과 사회의 접촉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력설하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것이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이민사회로 구성된 문화구조에 있다는것이다.

문화충돌론의 가장 적극적인 제창자인 범죄학자 토스턴 셀린은 일반적으로 이민들의

범죄률은 비교적 높다고 하면서《한 인종의 범죄률이 다른 인종의 범죄률보다 높으면 그 열쇠는 그 인종의 문화구조가 다른 인종의 문화구조와 충돌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각이한 여러 민족과 종족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고 문화충돌과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하여《통일적인 가치관념을 가지고있고 사회성원들이 공동으로 승인한 규범의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충돌이 발생할수 없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전체의 규범의식과 부분적인 사회의 규범의식은 통일될수 없다. 때문에 량자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고 력설하였다.

셀린은 자본주의사회의 이민사회구조를《연구》한데 기초하여 이민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충돌이 사회의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리론적으로뿐아니라 실천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서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의 저촉에 절대적인 범죄성을 부여하였다. 다시말하여 그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나 종족의 문화의 차이는 온갖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본원인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여러 이민들의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때문이라는것이다.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주민구성이 결코 사회에 불안을 주는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될수 없다. 이러한 론리에 따르면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적지 않게 존재하는 다민족국가들은 항시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안고 범죄로 시달려야 하며 반면에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에는 범죄의 근원이 없으며 따라서 범죄도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떨어진다.

오늘 소수민족을 하대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주의정책이 공공연히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부의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벌리고있는 반인종주의투쟁과 같은 행위들은 결코 범죄가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들인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민집단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주민구성에서의 다양성을 범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기초하여 범죄의 실제적근원을 은페시켜보려는 비과학적인 궤변이다.

문화범죄학에서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문화를 무턱대고 범죄적인 문화라고 력설하고있다.

문화범죄학의 제창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지위로 하여 사회의《주도문화》와 어울릴수 없으며 이로부터《주도문화》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반항의욕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 자기의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 즉 범죄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 력설하고있다.

사회의 발전과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고 이끌어온 근로인민대중의 고상하고 문명하며 건전하고 소박한 문화에 대하여 줴치는 이러한 궤변은 인류력사의 장구한 기간 그 주체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적부에 기생하며 생존하고있는 력사의 반동들인 착취계급이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한데로부터 가지게 되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기초한 반동적인 주장인것이다.

문화범죄학파를 이루는 범죄학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근로하는 하층계급의 문화를 무턱대고《범죄적》이며 범죄와《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는 문화로 주장하고있으며 지어는 그것을 범죄의 형태에 따르는 여러가지《범죄문화》로까지 구분하고있다.

실례로 반동적인 하층계급문화론에서는 하층계급이 인류사회가 생겨난 이래 시종일관

존재해온 집단이기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범죄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을 주장하고있다. 이 리론의 제창자인 반동적범죄학자 왈터 밀러는《인류사회가 생겨나 발전과정에 각종 층차의 계급이 부단히 발생, 형성되는것과 함께 서로 다른 계급 내부에서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으며 이런 산생, 분화과정에는 언제나 하층계급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면서《자기의 특이한 생활환경과 조건에 기초하여 그 문화구성도 부단히 변하여왔다.》라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하층계급의 문화는 범죄를 발생시킬수 있는 문화로 되며 하층계급문화도 문화충돌의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의 발생과 원인에 대해 설명할수 있다고 천박한 근거로서 력설하였다.

그리고 현대부르죠아범죄학리론의 하나인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사람이 하층계급의 어느《하위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어떤 범죄자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사회의 하층에 있는 근로하는 계급의 문화를《범죄하위문화》와《투쟁하위문화》,《도피하위문화》로 구분하고있다.

문화범죄학의 리론들에서 주장하는《근로대중의 범죄문화》에 관한 론의는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제도가 배태한 온갖 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력사는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진보적인 문화는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착취계급의 문화는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해독적인 작용만 하여온 반동적인 문화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부르죠아범죄학에서 주장되고있는《범죄문화》라는것은 사실상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내용을 갖추지 못한 문화 아닌《문화》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동사상주입책동에 의하여 일부 형성된것으로서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문화와는 인연이 없는것들이다.

2.3.2. 반동적통치계급의 정치적지배를 합리화하는 변호론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치계급의 정치적지배를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는 문화범죄학의 다른 하나의 반동성은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범죄의《영원성》을 주장함으로써 통치배들의 파쑈적통치실현을 정당화하는 변호론이라는데 있다.

인간의 본성적요구가 무시되고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의 요구마저도 무참히 짓밟히우고있는 파쑈적이며 범죄적인 자본주의사회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는것은 반동적인 부르죠아리론들이 추구하고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범죄로 얼룩진 자본주의사회의 실제적현실을 적극 외곡하고있는 다른 범죄학리론들과 함께 문화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으로 주장되는《범죄문화》나《문화의 충돌》과 같은것을 사회의 일시적현상으로가 아니라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현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다른 민족과 종족집단을 철저히 예속시키고 사회에 대한 파쑈적통치를 실현하려는 통치배들의 지배적요구와 리익을 리론적으로 담보하려고 하고있다.

문화범죄학에서는 우선 자본주의사회에서《하층의 범죄문화》와 서로 다른 문화들사이의 충돌을 피할수 없는 사회의《영원한》현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파쑈적통치를 합리화하고있다.

반동적범죄학자인 타프트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민사회로 구성된 자본주의사회의 문화구조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는 오랜 기간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는 허황한 궤변을 늘여놓았다.

특히 반동적인 범죄학자인 토스턴 셀린은 이민범죄를 론하면서 주장하였던 문화충돌의 범죄원인론을 지배계급의 파쑈적통치실현의 요구에 맞게 이민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전체의 문화구조측면에서 더욱 반동화하였다. 이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민사회구조때문에 생기는 문화충돌을 《원발성문화충돌》 또는 《제1차 문화충돌》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충돌은 주로 이민들속에 발생한다고 주장한 다음 뒤이어 《계발성문화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력설하였다.

《계발성문화충돌》이란 《제2차 문화충돌》로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민의 자식들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발전과 함께 사회의 문화적요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것으로 하여 같은 문화권내에서 일어나는 신구문화사이의 격렬한 충돌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것이다.

이자의 리론에 따르면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그 무슨《계발성문화충돌》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의 범죄는 없어질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다.

사회의 부단한 발전이 낳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차이까지도 범죄발생의 근본원인으로 보고있는 문화충돌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차이 지어 한가정의 아버지와 자식간의 서로 다른점까지도 범죄의 원인으로 된다는 허황하고 유치한 견해이며 천만부당한 비과학적주장이다.

사회의 발전은 새것의 부단한 창조의 과정이며 이것이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대사회에서 새것의 갱신주기는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이로 하여 이전에 볼수 없었던것들이 수많이 생겨나고있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이 더욱 다종다양해지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자의 론리대로라면 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차이가 날로 늘어나는것과 함께 범죄의 증가도 합법칙적현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인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문화범죄학의 반동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문화범죄학에서는 또한 반동적통치계급의 리익에 배치되는 자그마한 현상도 범죄시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할것을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다.

문화범죄학의 가장 반동적인 리론의 하나인 문화충돌론을 제창한 범죄학자 셀린은 《범죄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충돌한 다음 특정한 사람에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문화충돌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자면 특수한 사회적변화의 조건들이 구비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특수한 사회적변화현상들이란 지배계급의 리익에 배치되는《전쟁, 사회적변혁, 급진적인 정치운동》등을 의미하는것으로써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그 어떤 투쟁도 범죄시하고 철저히 탄압하도록 리론적으로 적극 안받침하고있는 문화충돌론의 계급적성격과 그 반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가로막으려는것은 력사의 반동들인 착취계급이 추구하고있는 변함없는 악습이며 목적이다.

오늘 반동적지배층의 적극적인 비호와 조장밑에 부르죠아범죄학계의 《정설》로 되여 사회의 범죄를 심히 외곡하고있는 문화충돌론과 같은 리론 아닌 《리론》의 영향으로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빚어놓은 범죄가 오랜 력사를 통하여 창조된 인류의 정신적 및 물질적부의 총체인 문화를 모독하고있으며 문화에 대한 통치배들의 그릇된 관점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인연이 없는 문화 아닌 《문화》들이 생겨나 사회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더욱 몰아가고있다.

2.3.3. 근로인민대중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천만부당한 협잡론

자본주의의 고질적질병인 범죄의 원인을 인류의 고상한 문화와 련관시켜 심히 외곡하고있는 문화범죄학의 반동성의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력사를 창조하고 전진시켜온 근로인민대중을 범죄자로, 범죄의 근원으로 매도하고있는 천만부당한 협잡론이라는데 있다.

문화를 매개로 하여 사회의 물질적부의 생산자이고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을 범죄자로 모독하고 멸시하는것과 함께 자본주의사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범죄의 실제적근원인 반동적지배계급과 특권층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정당화하는것은 문화범죄학파를 이루고있는 범죄학리론들의 공통의 목적인 동시에 상투적수법이다.

원래 범죄현상과 그 원인을 밝히는데서 문화적요인을 련관시켜 론의한 범죄학은 문화범죄학에서부터가 아니다. 문화범죄학이 주장되기 전에 문화가 범죄발생과 련관이 있다고 주장한것은 20세기초의 범죄학리론이였던 《문화전파의 리론》이였다. 《문화전파의 리론》은 이민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있는 집단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서로의 문화가 전파되며 그 과정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리론으로서 여기서는 주로 문화전파를 통하여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본과정과 문화와 범죄사이의 호상관계문제가 기본이였다.

그러나 문화범죄학의 리론들에서는 《문화전파의 리론》에서와는 달리 일정한 집단의 문화그자체에서 그것이 가지는 범죄적특성을 론한다. 다시말하여 문화범죄학의 《연구》대상은 《범죄문화》 그자체이며 주로 하층집단의 문화권에서의 비정상적인 생활관습의 형성과 사고형식에서의 변화, 범죄적인 《하위문화》의 발생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 범죄성을 주장한다.

문화범죄학은 바로 하층집단의 그 무슨 《범죄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의 하층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범죄와 직접 련관되여있는 범죄자이고 범죄집단이며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범죄문화》로 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하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상승욕망의 요구를 실현할 조건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불만과 억압받는 심리가 부단히 반복되는 과정에 집단에 일종의 반항적인 투쟁환경이 형성된다는것이다. 이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행위는 집단의 일상적인 선택의 수단으로 되여버리며 나아가서 이것이 하층계급에게 고유한 《범죄문화》로 형성되게 된다고 력설하고있다.

이것은 제도의 반동성과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사회에 차넘치는 범죄발생의 책임을 근로인민대중에게 넘겨씌우려는 지배계급의 파렴치한 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주장이며 본질에 있어서 통치배들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사전에 철저히 탄압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리론적구실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 반동적통치계급의 반인민적정책작성과 실행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변하고있는 문화범죄학의 갖가지 리론들은 지배계급의 통치목적에 맞게 온갖 범죄의 근원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밀어붙이고있으며 그것을 파렴치하고 사기적인 천만부당한 근거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있다.

우선 근로하는 하층계급의 문화를《범죄문화》로 헐뜯고 근로인민대중을 범죄자로 모독하는데서 가장 앞장서고있는 하층계급문화론에서는 사회에서 하층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때문에 사회의 대부분의 범죄도 바로 하층계급에서 발생한다는 당치 않는 론거로써 근로인민대중을《범죄자》라고 주장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오랜 과정을 통하여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력사와 문화의 유구성과 다양성까지도 범죄발생의 원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자들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부르죠아범죄학리론이 통치배들의 반동적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악착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아들딸들을 사회의 청소년범죄의 주범들이라고 적극 주장하고있는 범죄적하위문화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청소년범죄자들의 대다수가 남성로동자들이며 그들의 범죄는 다름아닌 하층계급의 문화구조때문에 발생한다는 사기적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아버지가 범죄자이면 아들도 범죄자여야 한다는 식의 파렴치하고 어처구니없는 이와 같은 궤변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안고있는 부르죠아통치배들의 충실한 사환군들에게서만 나올수 있는 궤변인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부닥치는 그 무슨《기회》라는 공간을 도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범죄를 근로대중에게 밀어버리고있는 차이기회구조론에서는 마치도 자본주의사회가 누구에게나《성공의 기회》를 부여해주지만 하층계급은 그 기회를 리용할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부족하기때문에 상층의 부유한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허황한 비과학적론거로서 근로대중을《범죄자》로 몰아대고있다.

이처럼 문화범죄학파의 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범죄에 대한 외곡되고 사기적이며 비과학적이고 천박한 론거로서 반동적지배계급의 지배적요구와 리익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남이야 어떻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이며 제도자체가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의 사용도 제도적으로 합법화되고있는 지극히 범죄적인 사회제도이다. 바로 이와 같은 범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적극 비호조장하고있는 반동적통치계급이야말로 사회의 실제적인 범죄자들인것이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현시기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현상인 범죄의 원인을 철면피하고 뻔뻔스럽게 외곡하고있는 부르죠아문화범죄학은 당치도 않는 비과학적근거로서 썩어빠진 제도자체에 의하여 산생된 사회의 온갖 범죄를 인류가 오랜 력사적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문화에 의하여 발생하는듯이 합리화하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탄압과 통치계급의 사회에 대한 반동적통치를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은 범죄현상과 범죄의 원인 및 예방 등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사회학분야의 학문이다. 때문에 사회의 독소와도 같은 범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무엇보다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들을 정확히 밝히고 그 예방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학의 이러한 고유한 사명과는 어긋나게 부르죠아범죄학은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범죄근절이 아니라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학설로 존재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사회를 침해하고 해치는 근원으로, 온상으로 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제도자체가 범죄를 낳는 사상적근원과 사회경제적근원이 깊으며 그것을 낳고 조장시키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바로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썩어빠진 사회제도가 사람들을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와 같은 범죄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온갖 범죄를 발생시키는 사상적 및 사회경제적, 물질적근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로부터 부르죠아범죄학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하여 제도 그자체의 반동성으로 빚어지는 사회의 범죄를 온갖 궤변들로 외곡하고 합리화하고있으며 범죄를 지배계급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법률적도구로 정당화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는것이다.

오늘날 력사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범죄학과 같은 비과학적인 리론으로 온갖 범죄가 란무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고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종말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이며 필연적인 결과이다.

실마리어 범죄, 부르죠아범죄학, 문화범죄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법률학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루계 제547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주체108(2019)년 9월 20일 발행 주체108(2019)년 9월 30일

ㄱ－195218 값 200원

DPR Korea
Address: Ryongnam-dong, Ryomyong Street,
Taesong District, Pyongyang
E-mail: ryongnamsan@star-co.net.kp
Fax: 0085-02-381-4410, 0085-02-381-4427

정기간행물번호
제19923호